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신청 링크



자료집
토론회 당일 제공



일시: 2026. 1. 22.(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공동 주최  이성운·부승찬·서미화·백선희·손솔·용혜인 의원실

대체복무 개선모임

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프로그램	내용
축사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변 윤복남 회장
좌장	김수정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발제1	기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대체역법 시민사회 개정안 - 주요 쟁점 중심으로 • 최새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토론1	양여옥 (전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현 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
토론2	장길완 (양심적 병역거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활동가)
토론3	시우 (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활동가 모임)
토론4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5	이호성 (법무부 교정기획과 사무관)
질의응답	

목 차

5p 축사

발제

- 20p 발제1. 기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 이재승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2p 발제2. 대체역법 시민사회 개정안 - 주요 쟁점 중심으로
 · 최세안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토론

- 41p 토론1. 대체역 심사위원회 문제 - 심사위원회 구성 중심으로
 · 양여옥 / 前 대체역 심사위원, 現 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
- 46p 토론2. 대체복무제도 문제점 - 심사, 복무 영역/기간/형태, 인권보장 중심으로
 · 장길완 / 양심적 병역거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활동가
- 68p 토론3. 다들 자유를 실현하는 대체역 제도
 · 시우 / 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활동가 모임
- 72p 토론4. 대체복무제도의 징벌적 성격 해소를 위한 방안
 · 형혁규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78p 토론5. 이호성 / 법무부 교정기획과 사무관
- 79p [첨부] 대체역법 시민사회 개정안
 시민사회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총괄과 검토의견 및 검토안
-

진행 순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이성윤·부승찬·서미화·백선희·손술·용혜인 의원실
대체복무 개선모임(전쟁없는세상, 민변, 참여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내용	주제, 발표
전체 사회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축사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복남 회장
좌장	김수정(前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지향)
발제	
발제1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최재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토론	
토론1	양여옥(前 대체역 심사위원, 現 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
토론2	장길완(양심적 병역거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활동가)
토론3	시우(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활동가 모임)
토론4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5	이호성 (법무부 교정기획과 사무관)
질의 및 종합토론	

축사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변호사입니다.

먼저 오늘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주신 이성윤·부승찬·서미화·백선희·손술·용혜인 의원님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준비해주신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전해 드립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0년 대체역법 제정으로 한국 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약 2만명의 병역거부자들이 형사처벌 되었다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역’의 신분으로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약 3,200여명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거쳤고, 연 인원 1,600여명이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체역법이 소수자의 양심과 신념을 보호하는 민주주의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제도 시행 5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인 ‘인권 보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는 현역 육군 대비 2배에 달하는 36개월의 복무기간을 뒀으로써 유엔자유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징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정시설에만 국한된 복무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들도 사회공동체의 다양한 영역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교도소 담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복무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개선책

이 필요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신념을 심사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사상검증’을 명분으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구성을 다양화하고,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도 필요합니다.

민변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체역법 개정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 법률가, 활동가, 당사자분들의 의견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징벌’이 아닌 ‘인권과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는 제도로 안착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임 역시 오늘 논의되는 소중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대체복무제도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연대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사



이성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시 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운입니다.

오늘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부승찬, 서미화, 백선희, 손술, 용혜인 의원님과 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수정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최새안 변호사님, 무엇보다 열띤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도적 공고화를 넘어 소수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외면받아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울분이 마침내 위로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정된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그들이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공동체 일원으로서堂堂히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마주한 현실은 무겁습니다. 대체복무가 병역회피의 수단

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현역 군인의 2배에 달하는 36개월의 복무기간과 교정시설이라는 한정된 복무지가 강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성격의 징벌에 가까우며,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자 했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체복무는 병역회피가 아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흔히 말하는 ‘빠센’ 군대 생활만이 국방의 신성한 가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존중하고, 적절한 제도적 개선을 제공하는 것 역시 국민의 자유와 삶을 보호하는 또 다른 형태의 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현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처럼 대체복무 기간의 조정, 복무 분야의 확대, 징벌적 성격 완화 등 대체복무에 대한 현실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수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논의 속에서 적절한 공존의 방안을 함께 모색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반드시 의정활동으로 이어져, 여러분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 병)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부승찬입니다.

오늘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함께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대안을 모색해 오신 관계자 및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 5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가 오랜 갈등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해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춰 제도가 내실 있게 안착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복무 기간의 적정성이나 복무 영역의 다변화 등 다양한 개선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 국한된 복무 형태를 공익적 기여가 가능한 여러 분야로 확대하고, 복무 여건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우리 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 귀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 논의는 국방의 의무라는 엄중한 원칙에 따라, 군 복무의 안정성과 국민적 수용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체복무제는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병역 이행의 한 방식인 만큼, 안보와 인권이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오늘 토론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을 바탕으로 우리 대체복무제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제시되는 의견들을 경청하여, 안보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의 대체복무제도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많은 시민단체와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 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대체역법 제정을 통해 대체역 제도가 도입되었고, 지난 5년간 수천 명의 대체복무자가 제도 안에서 복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역할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무 영역의 제한, 과도하게 긴 복무 기간, 복무 형태와 관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우려 등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의 지적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국가적 책무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엄정하면서도 동시에 인권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도가 ‘대안’이 아닌 또 다른 ‘징벌’로 기능해서는 안 되며, 복무 과정 전반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도 시행 5년을 돌아보며 그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복무 영역과 기간의 합리화,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의 민주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 강화, 복무 중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대체복무제도와 헌법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 잡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백선희입니다.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님, 부승찬 의원님, 서미화 의원님, 진보당 손술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수정 변호사님, 발제를 준비해주신 이재승 교수님과 최세안 변호사님,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고민을 나눠주실 양여옥 위원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20년 대체역법 제정은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병역의 의무가 공존할 수 있는 소중한 길을 열었습니다. 현재 1,600여 명의 대원이 성실히 복무에 임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5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된 미완의 과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징벌적 복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대체복무는 단순히 병역을 대신하는 차원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공

동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델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육군 대비 2배에 달하는 36개월의 복무 기간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징벌적 성격을 해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정시설에 국한된 복무지를 소방, 의료, 복지 등 공익적 필요가 높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대원들이 인권 침해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될 시민사회의 지혜와 전문가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대체복무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명예로운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오늘 이 자리가 한국 대체복무제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오늘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님, 부승찬 의원님, 서미화 의원님,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그리고 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좌장, 발제, 토론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양심에 따라 총을 잡지 않겠다 결심하면 감옥에 갇히던 때를 지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그리고 대체역법 제정을 통해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양심이 감옥이 아닌 사회를 위한 공공복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36개월이라는 징벌적 복무기간, 교정시설로 한정된 복무 영역, 일괄적 합숙 복무 등은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한다는 대체복무제도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공적 영역이 아닌 오로지 교정시설에서만 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사제도의 문제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군과 병무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큼니다. 신청인에 대한 과도한 질문, 인권침해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지금의 대체복무제도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지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귀결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개선되고 양심의 자유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하고,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제 입법을 명령한 지 8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2020년 도입된 대체복무제도는 여전히 징벌적 성격이 강하고 복무 영역 등의 한계가 명확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육군 현역병의 두 배에 달하는 복무 기간을 요구하며, 복무 영역 또한 교정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징벌이자 낙인으로 기능하며, 병역거부자가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어 독립적인 운영이 어렵고,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여러 국내외 기구들은 이미 수차례 대한민국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대체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고, 복무 분야를 소방, 의료, 방제 등 다양한 공적 분야로 확대해야 합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역시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권친화적 관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오늘의 토론회는 대체복무제도의 한계를 돌아보고,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제시해주신 ‘대체복무 개선모임’ 과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의미한 논의의 장을 함께 만들어주신 이성윤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공동주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기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제 및 토론

발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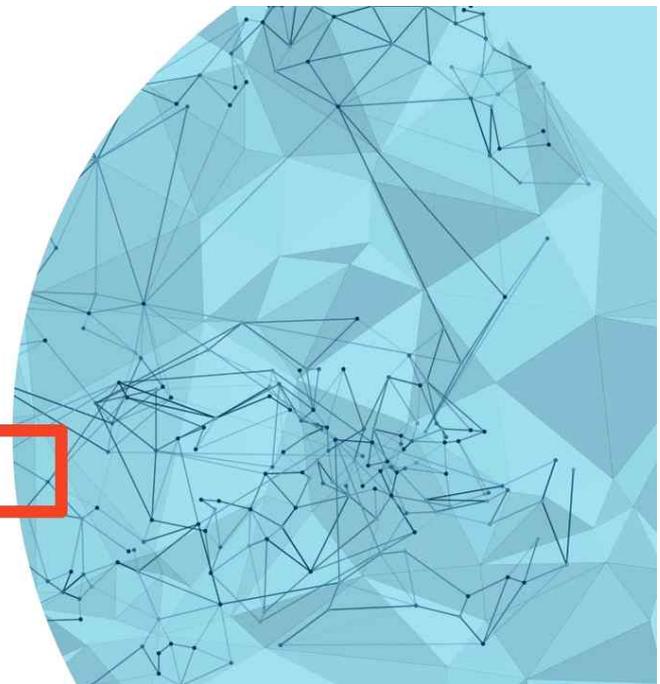
기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2026.1.22.

이재승(건국대 교수)



주요 내용

- 고대부터 현대까지 병역거부의 역사
- 독일의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 미국의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 유엔의 인권이사회 결의(77호/1998)
- 양심의 진정성 기준
- 한국의 병역거부제도
- 유엔 인권이사회(2023)의 정기검토 최종견해

2

양심의 갈등과 제도의 탄생

- 사회의 규범구조가 이원적/다원적 양상을 용인할 때 or 상이한 규범적 차원들이 나뉘도록 공존할 이룰 때 양심은 허용된다(정치질서와 종교적 질서의 이원론)
- 종교적 의미에서 근대적 개인의 창안과 세속적 수준에서 사회문화적 확산(마틴 루터/자유사상가)
-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들이 존재한다. 심각한 문제영역에서 차이 또는 차이에의 의지는 순교나 전쟁으로 비화한다.
- 사회대중이 갈등영역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영역으로 수긍할 때, 양립가능한 균형점들(대안)을 발견한다. 갈등은 봉합되고 윤리적 표준은 재조정된다.
Tolerance/toleration
- 훗날 양심의 천재는 다시 보이지 않은 과녁에 활을 겨눈다.
- 양심 또는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믿음이 창조하고 실현한 신비한 범주이다.

3

Rainer Forst 관용의 단계

1. 허용permission : 다수파나 당국과 소수파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관용. (괴테: 참아준다는 것은 상대를 모욕하는 것이다)—프랑스 낭트 칙령(1598)
2. 공존coexistence : 비교적 균등한 세력집단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관용. 사회의 평화를 위해 최상의 대안을 추구한다.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1555)-출국권(ius emigrandi)
3. 존중respect : 도덕적 신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그들이 정치적 도덕적 동등자들(political-moral equals)로 인정하는 것. -세속주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벽
4. 존경esteem: 상대를 도덕적 정치적 동등자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의 신념에 대한 도덕적 존경을 갖는 단계.—완전한 화이부동, **부조화의 조화를 이룬 상태, 개종전의 마음의 개방상태...**

4

병역거부의 역사(고중세)

- 서양고대-구약(신명기)은 반전평화종교를 수립하지 않음(가나안에 살고 있는 종족들의 집단살해 명령). 기원후 기독교는 군인과 기독교인의 양립불가능성 전제(특히 로마군대)
- Tertullianus-칼을 들지 말라, 병역은 황제숭배와 연결된 우상숭배라도 가르침
- Origenes-적에 대하여 무기사용을 부정, 모든 전쟁의 폐지를 주장(Contra Celsum 8, 69f)
- Chalcedon/Nicea 공의회- 성직사-수도사의 공직취임 금지(성직자는 병역에서 해방)
-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기독교도들이 병역을 거부하였고, 295년 막시밀리아누스가 교수형에 처해짐
- 아를르 공의회(314) 양심을 이유로 한 탈영병의 성체성사 참여를 금지함
- 아타나시우스와 암브로시우스---조국을 위한 군복무를 찬양함
- 테오도시우스- 기독교도 입대칙령 발표(416)-기독교도의 병역거부는 가혹하게 박해를 받았음.
-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기독교도뿐만 아니라 비기독교도에게도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참여를 정당화함. //11세기 이후 십자군운동 독려
- 중세-순결파/왈도파 병역거부-도륙당함//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수사회만이 비무장 집단으로 사는 것을 허용받음// 221년 교단규칙: 어느 누구도 살상무기를 휴대해서는 안 된다) 프라체스카 규다 스사트- 병역거부

병역거부의 역사(근대)

- 종교개혁 이후
- 보헤미아 형제단(모라비아교도), 재세례파(독/화), 스위스 형제단, 후터파(북미이주), 메노파//근대후기 퀘이커, 형제단교회(미국), 여호와의 증인, 그리스도형제단, 애미쉬
- 영국의 수평파-인민협정-강제복무금지(1949년 5월 1일 런던 탐에서 존 릴번, 토마스 프린스, 윌리엄 월런, 리차드 오우버튼)
- 11. (양심적 병역거부) 우리는 대표자들에게 사람들을 강제로 전쟁에 복무하게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타인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전쟁에 있어서는 전쟁 명분이 정당한 경우에만 인간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다.
- William Penn(1644-1718). 그는 퀘이커 교도로서 차알스 2세로부터 토지를 하사받고, 펜실베니아를 건설하였다. 1677년까지 영국에서는 종교법원(ecclesiastical courts)이 이단자를 화형에 처할 수 있는 영장(writ of haeretico comburendo)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소수종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나중에 퀘이커 교도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전쟁복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영국정부와 식민당국에 의하여 펜실베니아 통치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 19세기 -대부분의 평화교회들이 면제권을 얻거나 병역거부를 지속함

6

20세기 병역거부의 역사

제1차세계대전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했으나 징역형, 중노동, 민간 대체복무 등장

제2차세계대전

--독일에서는 국방력손괴죄로 가혹하게 처벌(처형된 사람도 다수발생), 미국에서는 군대 안에서 비집총근무(핵소고지, 데스몬드 도스 사례)

제2차세계대전후

독일 헌법에 병역거부권인정(헌법 제4조 제3항)

미국-현역 군인에게 비집총근무 인정, 제대.

세속화: 비종교적 사유로 병역거부자 인정

자유권규약에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광범위한 인정기준 마련

7

거부의 유형

거부유형	거부사유	취급
선택적 거부(selective conscientious objection)	정전론//민족적 동기	면제(제대)/처벌-정치적 사면(시민불복종)
보편적 거부(universal conscientious objection)	모든 전쟁 거부	면제(제대)/대체복무 *비집총복무자(1-A-O)
전면거부(total objection)	군대 및 대체역까지 거부	면제//처벌

8

독일의 병역거부 역사

- 프로이센-프로이센 메노파들에게 은전령(1780)/부과금부과
 - 1935년 병역법도입-전시형법-국방력훼손죄(여호와와 의 증인, 개혁재림파 가혹한 처벌)
 - 제2차세계대전후—주 및 연방의 헌법(1949)에 병역거부권 도입
 - 독일 헌법-병역거부권 인정(1949)
 - 모병제도입(1955), 징병제실시(1956)-독일청년들의 대규모 병역거부사태
 - 대체복무법도입(1960)
 - 동독-건설병제
 - 통일이후 군대규모축소-2014년 징집중단(모병제)
- 모병제 아래서 양심적 병역거부(현역 군인)는 여전히 문제됨

9

독일의 대체복무제

- 다양한 병역거부사유 허용
- 입대예정자뿐만 아니라 현역군인, 예비군에게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함, 여성도 인정함
- 군인의 병역거부권 행사는 제대신청으로 수용
- 현역과 대체복무의 기간상 동가성(초기는 1:1로 시작했다가 길어졌다가 다시 동등기간으로)
- 대체복무 이외에 다양한 복무영역 개발(재난구호, 개발봉사, 해외봉사, 자원봉사, 경찰, 자발근무)—근무영역별로 상이한 복무기간 설정
- 전면거부자(대체복무거부자)를 위한 자발근무제 도입
- 예비군(대체복무제)를 시행하지 않음
- 방어사태(비상사태)에서는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자를 대체복무시설에 동원함
- 대체복무면제제도(군대에서 형제의 사망, 성직자)
- 대체복무움부즈만

10

전면거부자

- 병역거부의사를 가지고 현역복무에 응하지도 않고 대체역 편입인정을 받은 후 대체역 소집에 응하지 않는 사람-total objector
- 독일에서는 ‘기존의 대체복무기간’보다 1년을 추가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자유근로제).
- 그러나 현실에서 어떠한 대체복무제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2월에서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러한 복역후 재소집은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 Grandrath v. Germany (2299/64) -1966. 여 호 와 의 증인/전면거부자(유럽인권법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은 정부의 입법재량이라는 취지의 결정)

11

유럽인권재판소

Bayatyan v. Armenia(Application no. 23459/03) 결정은 2011년 7월 7일 유럽인권재판소(ECHR) 대재판부가 내린 획기적인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보편적 권리로 처음 인정한 사례**

1. 사건의 배경

- **청구인**: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바한 바야탄(Vahan Bayatyan)은 2001년 징집 당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민간 대체복무를 희망했으나, 당시 아르메니아에는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다.
- **결과**: 바야탄은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되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

2. 결정의 주요 요지

- 재판소는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를 각 국가의 재량으로 보았던 과거의 입장을 변경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9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
- 유럽 평의회 대다수 회원국이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권협약을 현대적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살아있는 이론(Living Instrument Doctrine)을 전개함.
- 국가가 개인의 진지한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지 않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09)이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8)도 이와 유사한 논증구조를 선택함.

12

이라크 전쟁에 협력을 거부한 군인(독일)

- 군인이 병역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지만 전투기이착륙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한 파프 소령(이라크 전쟁은 침략전쟁이므로 그에 협조불가)
- 군대내 처분(항명을 이유로 소령에서 대위로 강등)
- 연방행정법원- 파프 소령의 **양심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

13

미국의 병역거부자들

- 독립전쟁—펜실베니아는 케이커교도에게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케이커 교도의 재산을 강제집행함
- 미국내전—(북군)대역자를 보내거나 대역자를 고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 300달러(현재가치 4,673달러)을 납부. 남군은 500달러 납부
- 1차대전—양심적 거부자—비전투적 군사적 역할 수행. 그러나 2천명의 거부자들은 이러한 역할도 거부하고 투옥되어 가혹한 처우를 받음. 농업노동이나 구제사업, 소방업무 수행
- 2차대전—징집대상자에게 병역거부 의사확인절차, 41년부터 47년까지 CPS(민간 공공서비스)에 12,000명 정도 투입. 전쟁채권이나 전쟁 스탬프 대신에 민간채권, CPC 스탬프, 전쟁피해자 구호스탬프 발행
- Desmond T. Doss—제7 안식일 교인, “양심적 협력자”, 비전투원, 영예의 메달…핵소고지(2016)
- 월남전—징병제시행—참전거부—시민불복종
- 판례와 법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1-A(병역), 1-A-O(비전투원 근무), 1-O(민간근무)

14

United States v. Seeger, 380 U.S. 163(1965)

제6조(i)의 면제의 의미에서 종교적 믿음의 척도는 그 믿음이 소위 면제의 자격을 가졌던 사람들의 신이 맡은 지위와 유사한 지위를 차지하는 진지하고 유의미한 믿음인지 여부에 있다.

(a)면제는 종교적 믿음보다 단지 개인적인 도덕률에 입각해서 전쟁을 반대하거나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회학적, 또는 경제적 고려에 기초하여 전쟁이 잘못이라고 결정한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b)여기에서 무신론적 믿음의 쟁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c)이 척도는 종교적 믿음에 입각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평등취급의 입법원칙과 일치한다.

2. 지역심사위원회와 법원은 거부의 믿음이 진지하게 견지되는 것인지 믿음이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지 결정해야 하며, 종교적 교리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믿음을 기각해서는 안된다.

3.제6조(i)의 확장해석에 의하면 이 사안의 신청들은 단순한 개인적 도덕률이 아니며 면제의 자격을 갖추었다.

15

미국병역법 50 U.S. Code § 3806

(i)전쟁을 양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이 장에 포함된 어떤 것도 종교적 교육과 믿음(religious training and beliefs)을 이유로 온갖 형태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을 합중국 군대에서 전투원 훈련과 근무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양심적 거부를 이유로 전투원 훈련과 근무에서 면제를 요구하는 사람이 ---군에 입대한 경우에는 비전투원 근무에 배치하고, 비전투원 근무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시라면** 국민보건의 유지에 기여하는 민간 업무(civilian work)를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을 수행한다. ...

→시저 사건(United States v. Seeger, 380 U.S. 163(1965)-윤리적 거부 인정

Supreme being의 도덕적 명령에 대한 복종을 공표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통적 종교에서 신이 맡은 역할에 견줄만한 위치를 확보한 “진지하고 의미있는 믿음”에서 유래하는 전쟁에 대한 견해를 공표한 사람들에게도 징집면제가 허용된다.

→질레트 사건(Gillette v. United States, 4010 U.S. 437(1971))—베트남 전쟁 참전 거부. 법원은 양심적 거부와 정치적 거부를 구별함

→종교적 교육과 믿음은 전통적인 종교와 동등한 힘을 가진 도덕적 윤리적 믿음을 포함하지만 오로지 정책(policy), 실용주의(pragmatism), 편의성(expediency) 또는 정치적 견해(political views)에 입각한 믿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믿음들의 혼성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될 수 있다(Welsh v. United States 1970) 16

미국 국방부지침(DODI 1300.06) sec.3

- 3.1 일반규정
 - a. 온갖 형태의 전쟁(war in any form)에 참가를 양심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 b. 그의 반대가 도덕적, 윤리적 또는 종교적 믿음(신념)에 근거한다.
 - c. 그의 입장이 확고하고, 불변적이고, 진지하고 뿌리깊다.
- 3.2 종교적, 도덕적 또는 윤리적 믿음
 - a. 전통적 종교적 훈련과 믿음 이외에 도덕적 윤리적 확신도 가능(다음을 증명)
 - (1) 도덕적 윤리적 확신이 전통적인 종교와 동일한 힘을 자신의 삶에 미쳤다는 점
 - (2) 도덕적 윤리적 확신이 신청인의 삶에 주요한 통제요소라는 점
 - b.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믿음을 유지하는 데에 진지함(sincerity)은 주요한 고려요소이다.
 - (1)진지함은 신청인의 사고와 생활,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공정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 (2)믿음의 진정성(integrity)과 신청의 일관성(consistency)을 결정하는 데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 국방부지침(DODI 1300.06) sec.3

- 3.2 종교적, 도덕적 또는 윤리적 믿음
- c. 신청인의 주장이 단지 군복무의 편이나 회피가 그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정도로 신청인의 군복무 이력이 충분한 견해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 (1)관련된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a)가정 및 종교단체에서 교육 / (b) 일반적 행실과 행동거지 / (c) 종교활동에 참가
- (d) 엄격함과 헌신에 있어서 전통적인 종교적인 확신이 형성되는 과정에 견줄만한 교육, 공부, 사색 여타 활동에 의해 획득한 윤리적 또는 도덕적 확신들
- (e) 신청인과 신청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신뢰성
- (2)신청인의 믿음이 심사권위자의 믿음체계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한 믿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a)특정한 교단의 소속 또는 특정한 신학적 교리의 신봉이 양심적 거부자를 위한 행정적 제대(Class I-O) 또는 비전투원 배치(Class I-A-O)를 보증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b)양심적 거부를 교리의 일부로서 옹호하는 종교단체나 여타 집단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입장이나 신청의 정확성을 필연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18

미국 국방부지침(DODI 1300.06) sec.3

- (c)역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르치지 않은 종교단체나 기타 집단에 가입하는 것이 양심적 거부 믿음의 고수를 반드시 배격하지 않는다.
- (d)신청인이 종교적 조직이나 전통의 일원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그러한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성원지위, 종교의 가르침, 신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신청인이 해당교단의 교리의 일부를 수용하지 않는 사실이 그의 신청의 가치를 반드시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확신이 신청인의 도덕적, 윤리적 또는 종교적 믿음으로부터 유래하는 한 각개인의 개인적 확신은 통제요소이다.
- d. 신청인의 양심적 거부가 국가의 국내외 정책에 관한 신청인의 정치적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양심적 거부자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러한 지위를 부인당해서는 안된다. 과제는 공표한 믿음들이 진지하게 견지되고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믿음들이 신청인의 행동을 말과 행위에서 지배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 3.3 입증부담
- a. 신청인은 (1)청구의 본성이나 기초가 여기에 서술한 양심적 거부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2) 병역거부와 관련된 믿음이 확고하고, 불변적이고, 진지하고, 깊이 견지된다는 점을 명료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로 보여주어야만 한다.
- b. 신청인은 Class I-O 이든지 class I-A-O 이든지 자신의 신청의 정확한 성격을 결정하고 해명할 부담을 진다.

19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77

- 1995년 유엔인권위 결의안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된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양심에 기초한 이성과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 - 현역 군인에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
 -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자유권규약 18조에 따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
 - 각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할 것,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해 거부자가 투옥이나 반복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할 것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한 박해를 피하려는 사람에게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취할 것,
 -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가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20

양심적 결정의 판단양상

- 양심적 결정의 양심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잘못하면 종교재판관
- 심오함(profundity)---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을 지나 더 높거나 더 깊은 차원, 심지어 궁극적 차원에서 입론하려고 함
- 진실성(truthfulness)---신청인이 자신이 믿는 바를 주장함
- 진지함(sincerity)---신청인이 자신의 원칙에 충실한 구속성을 보여줌
- 일관성(consistency)---한 영역과 다른 영역 사이에 주장 또는 판단이 모순되지 않은 상태
- 진정성(authenticity)---주장자가 스스로의 입장을 형성하고 드러내려는 태도(독창성)
- 통합성(integrity)---사유와 언행, 삶의 각영역을 아우르고 조망하며 인격적 종합을 이루는 상태
- 안정성(stability)---판단이 확고하고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견고한 상태

21

양심적 결정(?)

- 양심적 결정은 대체로 소극적인 행동 양태(어떤 것을 조용히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 따라서 병역거부보다는 병역회피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롤스)
- 오랜 시간 숙성되거나 심오한 판단이 도덕적 판단일 수 있다. 양심적 결정은 시간적 안정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은 변곡점을 통해서 회심한다. 탕자(용수)가 깨달은 자가 되고, 박해자가 구도자(바울)가 될 수 있다.
- 20대 초반의 젊은이의 양심적 결단은 “나는 이러한 도덕적 삶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겠노라”는 포부로서 의미를 가진다. 문제투성이 삶을 살았더라도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양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군입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대체복무에 편입될 요건을 동등하게 갖춘 것이다.
- 대체복무심사과정은 시성식(Canonization)이 아니다. 성자(모범생)를 뽑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확고한 사람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22

병역거부의 진정성의 증명

- 대체역의 노동강도와 역무시간을 강화 또는 연장시킬수록 양심성(conscientiousness)의 증명은 용이할 것이다. 반면에 양심성의 증명을 강도높게 요구할 수록 인권침해의 우려는 커질 것이다(trading-off).
- 독일은 대체로 대체복무와 군복무의 기간의 균형성을 중시하였다.
- 현재의 한국의 대체복무제도는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다. 더구나 군복무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긴데 여기에 2배를 하고 있다. 예비군 대체복무도 병역대체복무일수의 2배로 함으로써 대체복무자의 생업(후속적인 직업활동)에 지장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이해된다(취업과 생업에 여러 어려움을 남긴다. 2023년 유엔권고안 참조).
- 대체역편입신청인이 진정으로 대체역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한다면 족하지 않을까? 실제 입법자는 양심의 진지성을 규명할 필요가 없는 법제도를 만들었다고 본다.
- *시행규칙안 제2조 8. (그 밖에 법 제3조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3

유엔인권이사회(2023년 11월 3일)－ 대한민국 제5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 para 51. 위원회는 2019년 12월 27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복무(18~21개월)에 비해 차별적이고 징벌적이라는 점과 대체복무가 교정시설에서의 복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대체복무 거부자들과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석방되고 전과기록이 말소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의 이전 권고들(CCPR/C/KOR/CO/4, para.45) 및 개인진정 결정들(Jong-nam Kim et al. v. Republic of Korea (CCPR/C/106/D/1786/2008); Young-kwan Kim et al. v. Republic of Korea (CCPR/C/112/D/2179/2012); Jong-bum Bae et al. v. Republic of Korea)과 달리 이들에게 보상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제17조, 제18조).
- Para 52. 당사국은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교정시설 이외의 장소로 대체복무를 확대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없애야 한다. 또한 현역 군인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이전 권고들과 개인진정 결정들에 합치하도록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출소하여 범죄기록이 말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4

감사합니다.

25

발제2

대체역법 시민사회 개정안 - 주요 쟁점 중심으로

최 새 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 2

대체역법 시민사회 개정안
- 주요 쟁점 중심으로

최새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들어가며

-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의 중요한 이정표였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던 과거의 관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징벌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는 비판에 직면해있음
- 국가인권위는 여러 차례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현역병과의 형평성에만 매몰되어 대체복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또한 2023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체복무 기간 및 분야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이에 대체복무개선모임은 대체복무제도 시행 약5년간 발생한 문제점을 토대로, 대체복무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자 사회공동체에 대한 기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체역법 전부개정안을 성안함

대체복무 신청 대상 문제

- 현행법은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자에 현역군인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또한 병역판정검사시 대체역 제도 및 편입신청 절차 안내 제도가 전무한 상황임
- 핀란드의 경우 일반 군복무 중 대체복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에 비례하여 일반 군복무 일수에 2를 곱하여 대체복무 기간에서 삭감하도록 함
- 그리스의 경우 입대 예정자와 예비역은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하나 현역 군인은 우리나라 제도와 같이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대체복무 신청 대상 문제

- 개정안: 입영일 전까지 대체복무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편입신청 대상에 '현역 군인'을 신설함

현행안	개정안
<p>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다.</p>	<p>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삭제>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p> <p>4. 현역군인 <신설></p> <p>② <삭제></p>

대체복무 신청 대상 문제

- 개정안: 대체역 제도 통지 규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병역 의무자에게 대체복무 제도의 취지와 절차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함

현행안	개정안
	<p>제4조(신설)(대체역 제도의 통지) 지방병무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병역의무자에게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 대체역 제도 및 편입신청 절차를 함께 알려야 한다.</p>

대체역심사위원회 문제

- 현행법상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 구성도 국방부와 병무청의 영향력이 과도함
- 과거 독일의 경우 연방가정노동사회부 소속 민간 기구에서 심사를 전담하였고, 핀란드는 방위군 지역사무소에서 비군사복무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대체복무 심사
- 그리스의 경우 병무국 산하 특별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면 심사, 2차 면접 심사로 진행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심사위원을 설득하고 양심을 '검열'하는 과정을 거침

대체역심사위원회 문제

- 개정안: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군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에 기하여 불리한 대우 금지 조항을 신설함

현행안	개정안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둔다. ④(신설) 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인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본문의 각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체역심사위원회 문제

- 개정안: 위원 구성은 국방부장관 추천을 축소하고 병무청장 추천 몫을 제외함으로써 '군사적 이익'의 시각에서 양심을 검열하거나 재단하는 방식을 방지하고자 함

현행안	개정안
<p>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p> <p>3.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4.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p>	<p>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p> <p>3.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4.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p>

대체복무 분야 문제

- 현행법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교정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교도소', '구치소'로만 명시함으로써 복무 분야가 매우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를 여전히 징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
- 핀란드: 4주간 훈련 이후 비군사복무센터 산하 훈련소에서 응급조치 및 구난 활동, 폭력 대응법, 환경보호 등의 업무 진행. 훈련 이후 복무는 기관 내 타 근로자와 동등 처우 원칙 아래 이루어짐
- 그리스: 공익시설, 공공기관, 병원, 지자체, 법원, 우체국 등 다양한 비군사적 영역에서 출퇴근으로 복무하며, 다만 복무분야는 지원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병무국에서 배정

대체복무 분야 문제

- 개정안: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방 등'으로 변경하여 복무 분야를 확대하고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공익적 업무를 지정하여 대체복무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

현행안	개정안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18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공익적 성격의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대체복무 기간 문제

-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체복무기간 36개월은 현역 육군 기준 2배에 달하여 타국과 비교해도 가장 긴 수준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징벌'로 규정되고 있음
-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현역 육군 기준 1.5배를 넘는 기간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견지해옴
- 핀란드의 경우 대체복무기간은 현역 군복무의 2배이지만, 현역 군복무 기간 자체가 매우 짧다는 특징이 있음(165일, 대체복무의 경우 347일)
- 그리스의 대체복무 기간은 15개월로, 육군의 1.67배(해·공군의 1.25배)이며, 단축 복무 허용 규정을 두고 있음

대체복무 기간 문제

- 개정안: 최대 27개월로 하고, 자세한 기간은 실제 복무 분야와 특성 및 합숙복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복무 난이도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면서도 국제인권기준과도 부합할 수 있도록 함

현행안	개정안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 ② <신설>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군 복무의 실제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대 27개월 로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의 실제 복무기간은 대체업무의 난이도와 특성, 합숙복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체복무 형태 문제

- 현행법은 합숙복무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어 4급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강도 높은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임
- 현재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 핀란드, 그리스 등에서 합숙복무를 의무화하는 경우는 전무함
- 개정안에는 합숙복무를 재량규정으로 두어 업무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안	개정안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②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②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업무 특성상 필요에 따라 합숙복무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체복무 편입취소 문제

- 현행법은 병역법에 이미 징계/고발조항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대체복무 취소 대상이 아닌 요건도 포함하고 있어 부당하게 현역 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개정안에서는 편입취소 대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및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로 한정함

현행안	개정안
<p>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일과 개시 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6.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7.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p>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p>제2호 내지 제6호 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나가며

- 본 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양심을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대체복무 제도는 더이상 국방의 의무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병역의 한 형태로 인식되어야 함
- 현재 대체복무개선모임 등에서 시민사회 개정안을 토대로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현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평가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음
- 시민사회 개정안은 병역거부자의 권리 보장을 넘어 군의 민주화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숙의와 공감대 형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관철되기를 기대함

감사합니다

토론1

대체역 심사위원회 문제 - 심사위원회 구성 중심으로

양 여 옥 전 대체역 심사위원, 현 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

대체역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넘었다. 대체역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병역거부자의 급증을 우려해 엄격하게 제도를 설계했으나, 실제 제도가 운영된지 5년이 지났고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해소가 되었다. 오히려 그런 우려로 인해 만들어진 여러 문턱들로 인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가진 문제는 대체복무요원들이 매일 겪고있는 영역, 합숙, 기간 등의 문제와는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심사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높은 인용율¹⁾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더 정확히는, 드러나지 않는게 아니라 심사의 비공개로 인해 감춰져있다. 3년의 심사위원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필자 역시도 심사위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은 누가 심사위원인지도 알 수 없는게 현실이다.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서 처음 통과해야하는 과정이 대체역 심사이다. 대체역 제도가 도입기를 지나 정착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에 현재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인지 확인하고 개선할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1.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현 대체역법 제4조 제1항) 심사 절차는 대체역 신청 후 배정된 조사관의 사실조사,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대면 사전심사, 그리고 최종 전원회의의 보고 및 논의, 표결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관들 대부분은 병무청 파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기관의 소속 문제는 신청인들이 사실조사 단계에서부터 마주하는 현실이다. 비록 심사 전 신청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해도, 심사를 받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관이나 심사위원의 심기를 신경쓸 수밖에 없고, 심리적 압박을 넘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1) 대체역 편입심사 현황 (2024.12.31. 기준)

구분	합계	인용	기각	각하	철회 등
인원	3,580	3,486	6	8	80

제4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19쪽 참고.

국제기준인 ‘민간 성격’은 심사기구의 독립성 의미

이러한 현행 체계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입장은 확고하다. 대체복무는 단순히 총을 들지 않는 것을 넘어, 군 당국의 통제 밖에서 온전한 민간 성격(Civilian nature)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 기준이다. 즉, ‘누가 복무관리를 하는가’만큼 ‘누가 심사하는가’ 역시 핵심적인 척도로 보고있다. 우리와 유사하게 국방부 산하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군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포함한 그리스의 경우, 유엔으로부터 반복적인 개선 권고를 받고 있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는 그리스의 심사 과정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었다는 판결²⁾을 내리며 기구 독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도 지난 2023년 제4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³⁾에서 여러 회원국으로부터 군 당국의 통제 밖에서 심사와 감독 등 민간 성격 강화와 관련된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대안으로서 국가인권위 이관

이런 맥락에서 시민사회 개정안이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소속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변경하도록 제안한 것(시민사회안 제5조)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실질적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그동안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과정에서 꾸준히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권고를 내놓으며 인권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기구의 이관만이 곧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인권위 산하로 옮기더라도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고민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어떤 인물이 인권위원장으로 부임하느냐에 따라 심사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차원에서의 독립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심사위원 구성의 문제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심사위원 인원 축소

대체역 심사위원회 출범 초기 29명이었던 심사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1기 심사위원 임기가 종료된 2023년 6월말 13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당시 개정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8206호)⁴⁾은 위원 29명의 동시 심사 참여가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심층 심사를 제약한다는 점을 축소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특히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위원 전원의 의견보다 활동적인 소수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원 축소에 힘을 실었다. 표면적으로는 ‘심사 효율성’과 ‘신청인 감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소수 위원 주도에 의한 공정성 저해’라는 분석은 사실상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목소리가 심사 과정에 반영되는 것

2) 유럽인권재판소, CASE OF PAPAVALAKIS v. GREECE (Application no. 66899/14)

3) A/HRC/52/10

4) 의안번호 211820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등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D2E2W1X1Z0Z1X1G0Y511J5D2K1Z5M7

을 방해물로 여기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기 심사 과정 내내 국방부와 병무청이 각각 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군 관련 인사가 과다하다는 비판이 존재했고, 특히 군 출신 위원들의 고압적인 발언이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의 축소가 단행된 것은 심사 기구가 누구의 시각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며, 결국 군사적 시각에서 통제하기 쉬운 효율적 심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총 인원	국가인권위	법무부	국회국방위	대한변협	국방부	병무청
초기 (2020.6.~ 2023.6.)	29	5	5	4	5	5	5
현재 (2023.6.~)	13	2	2	2	2	3	2
시민사회 개정안	13	2	2	국회3	2	2	0 행안부2

<대체역법안의 심사위원 인원 구성 표>

심사위원 구성의 의도적 편향성

인원 축소 과정에서 나타난 더 큰 문제는 심사위원 구성의 편향성이다. 현재 13명의 위원 중 국방부와 병무청 추천 인원은 5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이는 단순한 인원 감축의 결과가 아니라, 민간 전문가의 비중은 축소하고 군 당국의 추천권을 강화하여 군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높인 구조적 개악이다. '효율성'이라는 명분은 다양한 가치관을 배제하고, 복잡한 양심의 문제를 관료적이고 군사적인 기준으로 심사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한다. 군 복무를 정상으로, 대체역을 예외로 간주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때 대체역제도는 본연의 목적인 '양심의 자유 보호' 보다는 병역자원 관리를 위한 수단이 된다. 보편적인 인권 기준보다 안보 논리가 우선시되는 구조적 편향 속에서 대체역 심사는 '병역기피자 색출'에 초점이 맞춰지고 신청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유엔 등 국제사회가 심사 기구의 소속 뿐만 아니라 구성에 있어서도 군 당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반복해서 권고하는 이유다.

병무청 삭제와 행안부 추가로 균형 확보

시민사회 개정안에서는 위원 숫자는 13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소속의 변경에 따라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촉의 권한을 주고 추천기관에서 병무청을 제외한 대신 행정안전부를 추가하였다.(시민사회안 제6조제3항)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직접 징집을 담당하는 병무청은 심사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징집기관인 병무청을 추천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심사위원회가 군의 행정적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다. 병무청을 대신해 행정안전부를 새로운 추천 기관에 포함한 것은 대체역 제도의 외연 확장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현재 교정 시설로만 제한된 대체복무 영역을 향후 소방, 재난 구호 등 공익 서비스로 넓히기 위해서는 지방 행정과 소방청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공익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는 행안부 추

천 위원이 참여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해당 인력이 사회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회 추천 인원이 3명으로 늘어난 부분은 인권의 영역이 정쟁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인권적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인권위 추천을 3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기구의 본질에 더 부합하지 않을지 고민된다. 심사가 보편적 인권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려면, 추천 구조 전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인권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기를 바란다.

3. 심사의 질적 전문성

심사위원의 자격

실제 심사 현장에서는 군의 영향력만큼이나 '양심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라는 질적인 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시민사회 개정안이 현행법상 위원 자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삭제한 것은 양심을 질병이나 심리적 결함으로 치부하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위원 자격에 '10년 이상 재직한 4급 이상 공무원' 항목을 남겨둔 점은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심사위원에게 기대되는 전문성은 행정 능력이 아니라 양심에 대한 판별력이다.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국토, 농림, 경제 등 양심 심사와 무관한 분야의 행정 경력을 가진 사람도 가능하고, 국방부나 병무청 출신 공무원일 경우에는 또다시 병무행정의 연장선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행정 경력만으로 양심의 영역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심사위원 내부 교육과 윤리규정 의무화 필요

심사의 전문성은 법에서 정한 자격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심사위원 위촉 전후로 유엔 인권 기준, 대체역 제도의 취지와 배경,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심화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심사위원의 인권 의식을 상향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 비현실적인 특정 상황을 가정해 답을 강요하는 함정식 질문이나 지나친 사생활 침해, 훈계, 편향된 시각에 기반한 반복 질문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을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위원회 차원의 경고나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내부 윤리 규정이 필요하다. 이미 1기 위원회 당시 이러한 부적절한 질문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가이드북을 마련했으나, 만드는 과정에서의 이견과 낮은 활용도로 인해 실질적인 제어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지침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사위원이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동반되어야 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신청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비공개 심사의 한계 - 사회적 감시의 부재

이 모든 구조적, 인적 문제가 아직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심사 과정

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비공개 심사 원칙⁵⁾으로 인해 심사 내부에서 어떤 발언이 오가고 어떤 논리로 판정이 내려지는지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 실제 목격했던 부적절한 질문이나 고압적인 태도들이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이유도 이러한 폐쇄성 때문이다. 양심을 심사하기 위해 수집하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들은 철저히 보호해야겠지만, 이것을 명분으로 하여 심사위원들의 편향된 시각과 인권침해적 발언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심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외부의 비판은 가로막히고 사회적 관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심사 과정의 기록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심사 과정과 결정문, 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마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역 심사는 군대를 가지않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얻기위한 첫 관문이다. 심사 기구를 군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 그리고 그 구성을 인권 전문성을 갖춘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소속을 옮기는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양심의 자유’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자,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다. 그래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양심을 취조하거나 교정하는 곳이 아니라 확인하고 존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5) 대체역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④ 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토론2

현행 대체복무제도 문제점 - 심사, 복무 영역/기간/형태, 인권보장 중심으로

장길완 양심적 병역거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활동가

1. 들어가며

앞선 발제와 토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현행 대체복무제도 안에서 어떻게 그 권리가 구현되어야 하는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복되는 의견은 줄이고 「대체역 시민사회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 중에서 3년간 대체복무를 경험했던 병역거부자로서 주요 쟁점(영역·기간·형태·인권보장)을 중심으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¹⁾²⁾ 아울러 이번 토론회 시기에 맞춰 현재 대체복무를 경험한/경험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고(이하 <제도 인식 조사>), 해당 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가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어떤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지 같이 정리했다.³⁾

2. 대체복무제도의 출발점 - 잘못 끼워진 첫 단추

한국은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⁴⁾과 같은 해 대법원의 판결⁵⁾ 전까지 해방 이후 약 2만 명의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한 국가였다.⁷⁾ 징병제인 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늦은 시기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으며,⁸⁾⁹⁾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등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사회공동체에 기여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회적 낙인과 처벌이 장기간 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단 한명의 예외 없는 징집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구 「병역법위반등의범죄

1) 본인은 2021. 9.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후 2022. 5.부터 2025. 5.까지 3개 기관(공주교도소,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함.

2) 개정안을 토대로 대체복무 개선모임에서는 주요 쟁점 4가지를 중심으로 의원실들과 입법안 발의를 제안 중에 있음.

3) 조사 결과는 토론문 하단에 첨부해놓음.

4) 헌법재판소 2018. 6. 28.자 2011헌바379 결정

5)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6) 정치적 신념(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선고한 최초의 판결은 다음과 같음: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564 판결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노818 판결)

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2016. 5. 10.), 숫자로 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https://amnesty.or.kr/10835/blog/숫자로-본-양심에-따른-병역거부>

8) 영국(1916년), 핀란드(1931년), 미국(1940년), 독일(1961년), 프랑스(1963년), 호주(1964년), 스위스(1996년), 그리스(1998년), 대만(2000년), 러시아(2004년), 벨라루스(2016년), 이스라엘(2002) 등

9) 참여정부 시기였던 2007년 국방부에서 사회복무제도 내에 병역거부자를 포함시키는 방향의 대체복무제도 추진을 기획했으나, 2008년 좌초됨. 참여연대(2007. 11. 1.), [동향4] 사회복무제 확대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월간복지동향2007/662144>

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병영 국가화를 시도했던 군사정부 시절의 잔재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된 영향이 크다. 또한 개별 사안에 있어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으나,¹⁰⁾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오랫동안 외면 받아온 주제였으며,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주요 조치 중 하나인 국가적 차원의 사과가 제대로 공표되지 않은 것은 대체복무제도가 여전히 징벌적인 제도로 운영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라 생각된다.¹¹⁾ 국가의 배상 책임은 논쟁적인 지점이라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성원권을 박탈해 온 역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유감 표명이 없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대체복무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사법적 처벌에서 행정적 처벌로 형식만 변화된 것은 아닐까?

대체복무제도는 도입 논의 초기부터 사회공동체의 공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재는 누락된 채 ‘현역 군인의 박탈감’이라는 모호한 근거와 ‘병역기피자를 걸러내야 한다’라는 두 가지 강력한 시각이 전제되었다. “교정시설과 합숙 형태는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반영되었고,¹²⁾ 복무 기간에서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었다.¹³⁾ 제도 도입 당시의 논의 과정이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제는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고, 군사주의적 시각에 기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더 나은 제도를 숙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2023년 첫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 되던 시기 국회에서 진행하였던 <양심적 병역거부, 진단과 모색> 국제 컨퍼런스에서 대체복무제도는 “지금까지 낙인과 처벌의 대상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개선과 병역거부자의 명예회복에 바탕해야” 한다는 당시 대체역 심사위원이었던 강인화의 지적을 제도 개선의 논의 과정에서 되새길 필요가 있다.¹⁴⁾

3. 대체복무제도 문제 - 양심 심사의 불/가능성

앞선 전 대체역 심사위원이었던 양여옥의 토론 내용에서 지적되었듯이 양심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병무청 산하에 설치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전인적 선택’이라 할 수 있는 병역거부의 양심과 신념을 경청하기보다, 신청인에게 모욕을 주는가 하면, 때로는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추천된 전직 장성 출신 심사위원에게 ‘군에 대해서 불온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훈계를 듣는 장으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10) 한겨레(2009. 1. 16.), [단독] 군대서 숨진 ‘여호와의 증인’에 “국가책임” 첫 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3627.html

11) 유엔인권사무소 서울(OHCHR Seoul)(2015), 「전환기 정의란 무엇인가?」, 1쪽. “전환기 정의는 책임 규명, 정의 실현, 화해를 보장함으로써 과거 대규모 인권 침해의 유산을 청산하고자 하는 다양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전환기 정의에는 사법절차와 비사법절차가 있으며, 대화 및 의견청취, 진실 규명, 소추, 배상, 권리 침해 재발 방지 조치, 기억화 노력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피해자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12) 경향신문(2022. 8. 30.), ‘대체복무 설계’ 이남우 “복무기간 등 완화 여지 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208300946001>

13)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2018),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자료집, 6쪽.

14) 강인화(2023),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쟁없는세상 20주년 국제회의의 ‘양심적 병역거부 진단과 모색』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5쪽.

게다가 양심과 신념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심사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심사 과정이 계속 진짜(병역거부자)와 가짜(병역기피자)를 걸러내기 위해 신청인에게 과도할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으며,¹⁵⁾ 이러한 과정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 과정과 난민 심사 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¹⁶⁾ 최근 외부 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충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판결에 대하여 “법이 더 이상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가’만을 묻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았듯이,¹⁷⁾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맥락 속에서 양심이 ‘구성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병역거부자를 차별/배제해 온 사회적 규범을 성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대체역 신청인의 인권 보장 규정 신설, 중국에는 대체복무제도의 ‘탈(脫) 국방부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치적 신념으로 인하여 병역거부를 하였고, 그 양심에 대한 표출 행위로서 정당 활동을 한 경우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는 정당 활동에 대한 기록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그래서 정치적 신념을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였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신념이 향후 미래에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요원이 되면 대체역법 제24조와 제24조의 2에 의해서 정당 활동을 하면 징계(복무기간 5일 연장, 4회 이상 위반 시 편입취소) 대상이 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진짜’ 병역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 활동을 부단히 증명해야 한다면, 복무를 시작하는 순간 그 신념이 표출되는 활동을 금지당하는 모순적인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실제로 병무청에서는 2024년 복무 중 정당 활동 여부를 정치적 병역거부자들이 소속된 기관에 문의하여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 바 있다.

4. 대체복무제도 문제점 - “대체복무요원이 된 병역거부자”¹⁸⁾

대체복무가 “병역과 신념이 조화로운”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해 본다면,¹⁹⁾ 군사주의적 사고 속에서 병역의 가치가 월등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현역 군 복무가 가장 높은 가치(가장 힘든 일) 평가되고, 돌봄노동(이미 사회복무요원은 돌봄노동 영역에 투입 중)을 하거나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에 비해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복무기간, 형태, 처우를 설정하는 ‘줄 세우기’가 여전히 존재한다. 병역거부를 논의할 때면 현역 군인은 항상 ‘엄동설한에 열악한 막사에서 생활’하는 고생하는 사람으로 상징화되고(교도소 직원으로부터도 자주 듣게 되는 말),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현역 군인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존재로 상상된다. 당연히 현역 군인의 처우가 나아질 필요가 있지만, 서로가 제로섬 게임을 지속할 이유가 없음에도, ‘군대보다 편하다’라는 인식이 재생산

15) 필자가 신청할 당시에는 본인 진술서, 부모 진술서, 본인 진술서에 기재된 활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제3자 3인에 대한 진술서, 범죄경력회보서,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해야 했음. 현재는 부 또는 모 중 한 명의 진술서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확인 필요.

16) 전쟁없는세상(2020. 5. 12.), 자격 없는 이들의 주제는 도전 - 그런 난민, 병역거부자, 트랜스젠더는 없다, <https://withoutwar.org/?p=16269>

17) 류민희(2026), 「성별인정의 본질을 다시 묻는 판결, 그리고 한국 성별정정 제도의 다음 단계」, 『사법정의와 여성 5 - 2019-2025 여성인권 판례비평』, 594쪽.

18) 해당 표현은 과거 전쟁없는세상 단체 블로그에 기고하였던 아래 본인의 글에서 인용해왔음. 작성 당시 대체복무 중이었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기고 하는 경우 불이익 조치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대체복무 표류기> 첫 번째 연재 기고자들은 가명으로 기고하였음을 밝혀둠.

전쟁없는세상(2023. 10. 20.), [대체복무 표류기] 대체복무요원이 된 병역거부자 : 대체복무제도가 상상하는 병역거부자의 모습에 대한 단상, <https://withoutwar.org/?p=20821>

19) 대체복무를 운영 중인 전국 약 30여개의 교정시설 내 대체복무 생활관 현판에 붙어 있는 글귀임.

되는 것이다. 정작 제도 도입 이후 지난 5년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점점 사회적 의제로서 주목 받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1) 복무영역

복무영역이 교정시설 단일 기관으로 정해짐에 따라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가시화, 두 번째는 공익성을 찾기 어려움, 세 번째는 장소가 바뀌지 않아 처벌의 감각이 계속되며, 마지막으로 교정시설의 폐쇄성과 위계성으로 인해 인권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징역살이' 시절에 '수용동 도우미'로 일했던 이들이 옷(신분)을 갈아입은 상태로 여전히 교정시설에 머무름에 따라 사회적 낙인이 여전하고, 시민들과 접촉면을 잃게 됨에 따라 비가시화되었다. 게다가 교정시설 내에서도 개개인의 특기를 살려 업무영역을 넓히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직원을 보조하는 업무도 하게 되었지만,²⁰⁾ 인력난에 시달리는 교도관의 업무를 계속해서 넘겨받거나, 계획적 성격의 업무(중앙통제실 CCTV 감시 업무, 수용자 도주 방지 업무, 내정문 감시 업무 등)를 부과받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병역거부자로서는 교정시설 내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노동이 공익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업무의 강도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설문조사를 확인하면 현재 교정시설로 한정된 복무영역에 대해 대다수의 병역거부자는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응답자의 85.7%(48명)는 '복지·소방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현행 유지' 의견은 10.7%에 불과했다. 영역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단순 교정직 보조를 넘어 인력난이 심한 공익 분야(요양, 소방 등)에 배치됨으로써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인력 배치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탄약 관리나 초소 구축 등 교도소 내 특정 업무가 양심의 자유와 충돌하는 '업무 부적합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대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복무를 통해 '대체 징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개인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원하고 있다. 대체역심사위원회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복무영역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역 확대가 필수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복무기간

복무기간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복무 중인 이들도 36개월에 달하는 복무기간이 징벌적이고, 응답자의 69.6%(39명)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복무기간은 병역거부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나 장기간 대체복무에 묶여있음으로 인하여 복무 이후, 사회 복귀 과정에서 대다수의 대원은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소집해제가 가까워지는 것에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3년간 자기 경력을 쌓지 못하게 됨에 따라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현행 36개월의 복무기간에 대해 응답자 전원인 100%(56명)가 '길다'고 응답했고, 현행 합숙·교정시설 근무를 유지할 경우 적절한 복무 기간으로는 현역병의 1.5배 수준인 '27개월'을 꼽은 응답자가 69.6%(39명)로

20) 국가인권위원회(2023. 5. 10.),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조정하고 복무기관 및 영역 다양하게 확대해야,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093&searchCategory=&page=1&searchType=total&searchWord=%EB%8C%80%EC%B2%B4%EB%B3%B5&menuLevel=3&menuNo=91>

가장 많았으며, 현역병과 동일한 '18개월'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30.4%(17명)에 달했다. 복무 영역이 확대되고 출퇴근이 가능해진다고 가정해도 복무기간은 '27개월'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7.1%(32명)으로 가장 높았다.

3) 복무형태

현행 '합숙' 형태의 복무 역시 개선 요구가 높았다. 합숙과 비합숙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8.9%(33명), 전면 출퇴근 복무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37.5%(21명)인 반면, 현행 합숙 복무가 적합하다는 의견은 3.6%(2명)에 그쳤다. 병역거부자들은 합숙이 업무 효율과 무관하며 군 복무를 무리하게 모방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육아 및 가사 조력 등 가정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고, 합숙 시설 유지에 따른 세금 낭비가 있으며, 장기간 단체 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일괄적 합숙 복무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대다수 요원은 일과 후에도 이어지는 교정시설 내 합숙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감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상시 대기가 필요한 군인과 달리 직원 보조업무를 하는 우리에게 합숙을 강요하는 것은 순전히 군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징벌적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이에 따른 숙식 제공 비용이 오히려 '세금 낭비'라고 꼬집기도 했다.²¹⁾

4) 인권침해

설문 결과 대체복무요원들은 복무관리관 및 직원들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복무관리관으로부터 인권침해·가혹행위·둘 다 당했다는 응답은 41.1%(23명)였으며,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가혹행위·둘 다 경험했다는 응답은 42.8%(24명)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경향신문 조사 결과와도 같은 경향인데, 인권침해·가혹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는 경우 응답이 더 높아졌다. 타인이 복무관리관으로부터 인권침해·가혹행위·둘 다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44.6%(25명)나 되었으며,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가혹행위·둘 다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53.6%(30명)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대원으로부터 인권침해·가혹행위·둘 다 경험하거나(16.1%), 타인이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19.7%)에 대한 응답은 수치가 낮다고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보여진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직원이나 복무관리관이 '대체복무요원을 예비 범죄자나 수용자처럼 대한다'거나, 인사를 90도로 안 했다고 모욕'을 주거나, '반말과 하대, 욕설이 일상'이라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본인도 복무 생활을 하며 군대식 구보 등 군대 문화를 강요하거나, "모든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는 것은 노예"라는 발언을 교육센터장에게 듣거나, 군인 혹은 수용자처럼 정자세로 앉아서 인원 점검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생활실에서 슬리퍼, 반바지를 착용하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고 벌점을 받는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 대원들 간에도 3년간 갇혀 지내는 폐쇄적인 환경 탓에 위계질서가 생기거나, 따돌림, 뒷담화, 심지어 폭력 사태까지 목격되었다는 응답도 존재하였다. 성소수자 대원에 대한 차별 발언과 혐오 표현, 괴롭힘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어 소수자성

21) 더해서 설문조사에서는 가족이 암 투병 중임에도 합숙 때문에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임종 후 장례와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에도 휴가가 턱없이 부족했으며, 출퇴근이었다면 가족의 상태를 더 일찍 살폈을 것이라는 회한 섞인 의견을 남긴 병역거부자도 있었음.

을 가진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인권 보장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²²⁾

(1) 교정시설의 ‘군대식’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교정시설 특유의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가 대체복무요원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욕설이나 "폐급", "세금 도둑"과 같은 인격 모욕적 발언, 반말 등 하대하는 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의 잘못을 대원에게 전가하는 '내리갈굼'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휴가나 외출을 고의로 제한하는 등 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대원들을 통제하려는 경향도 보고되었다. 교정시설이 통합방위법상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각종 통제를 '이유 없이' 정당화하고, 미시적인 형태의 규율이 넓은 재량 권한을 통해 대원들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인다.²³⁾

(2) 다양한 신념과 소수자성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 중 특정 종파의 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정치적 병역거부자도 일부 존재한다. 병역거부가 시민불복종 운동의 한 방식이라는 맥락을 일선 담당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적 신념' 대원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개인 신념' 병역거부자가 주변화되는 문제도 발생한다.²⁴⁾

또한 앞서 언급된 성소수자 병역거부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배경의 신념과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대체복무기관에서 충분히 존중되고 있지 못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비거니즘 신념으로 병역거부한 병역거부자가 조리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내용에 관한 내용이 타 직원이나 대원에게 누출되거나, 성소수자 대원에게 성적 지향을 표명하지 말 것을 직원이 요구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대체복무 현장에서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병역거부자에 대한 고려나 별도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파악되지 않는 현황

대체복무요원이 인권침해 가혹행위를 겪거나 목격했을 때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면 그렇지 않다. 인권 보장과 관련된 법령상 근거는 법무부 훈령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3조가 유일하며,²⁵⁾ 매달 인권진단, 매 분기 복무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2) 오마이뉴스(2024. 12. 2.), 성소수자의 대체복무, "적응해보겠다"는 말이 안 나오는 이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3793

23)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정보공개 행정소송 당시에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매뉴얼이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어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관리지침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는 준비서면에서 "국가보안시설인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구합60893 판결

법무부(2024), 「2024구합608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희망법(2024. 12. 27.), [승소소식]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매뉴얼 정보공개 소송, <https://hopeandlaw.org/승소소식-대체복무요원의-복무관리-매뉴얼-정보공개/>

24)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에서는 병역거부자를 분류함에 있어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종교적 신념으로, 비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개인적 신념으로 분류하고 있음.

25)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3조(인권존중) 기관장과 기관 구성원은 대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해당 조사에서 인권침해, 가혹행위, 불합리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부재한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가 없다’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신고 시 익명성 보장이 안 되거나, 복무관리관의 재량권이 너무 커서 불이익(외출, 외박 제한 등) 조치가 행해지거나, 불이익 조치를 받을까 봐 참게 된다는 응답이 있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대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인권진단 및 복무만족도 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실효성 없다(41.1%)’와 ‘매우 실효성 없다(28.6%)’라는 부정적 응답이 합계 69.7%에 달했다. 대원들은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 금지(69.6%)’,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의무 이행(66.1%)’, ‘익명성 보장(51.8%)’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의 시스템이 대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거나 실질적인 보호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병무청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나, 병무청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복무 실태 점검 항목에서도 ‘휴가, 외출 외박 등’을 적절하게 부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을 뿐이며, ‘대체복무 부적응자 유무’를 확인하는 항목에서도 실제로는 신체검사 4급을 판정받았음에도 1~3급 판정받은 대원과 동일한 강도의 육체노동을 부여받거나,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는 대원이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외래진료 및 복무기간의 심층 상담 및 관리로 모두 정상 업무 수행 중’에 있다고 기재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인 조사가 진행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²⁶⁾

5. 제도 개선의 과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로써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제도가 가진 징벌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마저도 제도를 ‘기피’하고 있고,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존재하지만, 꾸준히 대체역 신청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대체복무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대체복무마저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이 2026.1. 기준으로 11명에 달한다. 즉,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파의 신자들만 사실상 이용하는 제도로 계토화되고 있다.

대체역법에 대한 2024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서 “대체복무제도의 등가성(형평성)은 복무기간 뿐만 아니라 복무의 내용과 강도, 합숙 여부 등 복무의 전체적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교정시설에서의 보조업무는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업무이므로, 이미 복무의 난이도나 강도 면에서 현역 복무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기계적으로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로 정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소수의견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⁷⁾

그래서 대체복무제도가 인권과 평화의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과 구체

26) 병무청(2021-2024), 「대체복무요원 합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

27) 헌법재판소 2024. 5. 30.자 2023헌마32(병합) 결정

아울러 소수의견에서는 ““단지 병역기피자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체를 잠재적인 병역기피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기도 함.

적인 과제가 필요하다.

먼저 인식의 전환은 대체복무제도의 원래 취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는 ‘병역기 피자’를 쫓아내고, 현역 군인의 박탈감을 고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취지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자에게 사회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공익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를 중심으로 제도가 재설계 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군사주의적 시각에서의 국가와 군만이 공동체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국가 안보’ 중심의 시각에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간안보’에 대한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²⁸⁾ 현재 제도는 국가 중심의 안보, 그리고 현역 군인과의 형평성에 비해서도 병역거부자가 짊어져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커 ‘병역과 신념이 조화’롭기 보다는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1) 복무영역 확대(소방, 사회복지시설 등), 2) 복무기간의 합리화(27개월 이하), 3) 복무 형태의 선택권 부여, 4) 실효적인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사회복지요원은 돌봄 노동 영역에 투입되고 있고 소멸 지역에 돌봄 노동을 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은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합숙 복무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는 없으며 복무기간도 징벌성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설문조사에서도 **인권침해, 가혹행위,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대원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비'(73.2%), '인권보호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48.2%),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 확립'(39.3%)** 등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대체역법 안에 권리장전 성격의 조항(차별금지 원칙 확인 등), 인권침해 피해 예방/구제에 대한 규정(사회복무요원 상 '괴롭힘 금지법' 조항 대체역법에 이식)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6. 나가며

2021년 대체역 심사를 시작으로 2025년 복무를 마치기까지, 심사와 복무를 합쳐 지난 5년이라는 시간을 대체복무제도와 씨름하면서 보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현행 제도는 병역거부를 제도화하기 까지 싸웠던 수많은 평화활동가와 병역거부자들이 염원했던 ‘양심과 의무가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었다. 국가 안보라는 명목하에 36개월이라는 징벌적 기간과 폐쇄적인 교도소에서 합숙 형태를 유지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의 실현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의 ‘처벌’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는 병역거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려는 불가능한 시도에서 벗어나, 시민 개개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 안보’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5년의 시간을 통과해 온 병역거부자이자 활동가로서, 대체복무제도가 더 이상 차별과 배제의 제도가 아닌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새로운 이정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제는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변화가 뒤따라기를 바란다.

28) 이해정, 박지범(2013),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국제.지역연구』 제22호 제1권. “인간안보는 기존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군사적 위협은 물론 경제나 문화적 분야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을 인간으로 설정하는 비전통적인 안보개념으로, 탈냉전 이후부각된 내전, 기아, 빈곤, 인종 청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으로 유엔개발계획에 의해 최초로 주창되었다.”

[첨부] 대체복무요원 제도 인식 조사 결과

[설문조사] 대체복무요원 제도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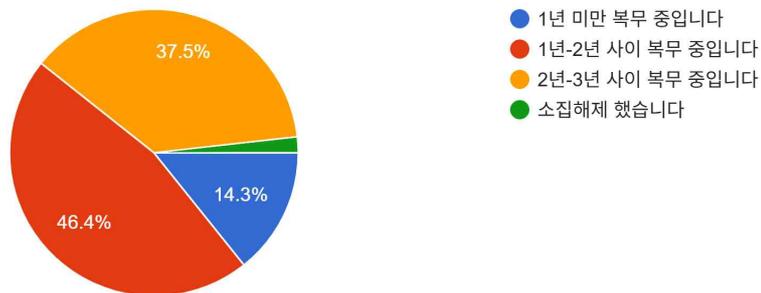
- 조사 대상: 대체복무제도를 경험한/하고 있는 병역거부자
- 조사 기간: 2026. 1. 14.(수) - 2026. 1. 16.(금)
- 조사 참여자: 56명
- 조사 담당자: 장길완 (대체복무 개선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조사 방식
 - 현재 대체복무 중에 있는 병역거부자에게 설문조사 링크(구글 설문지) 온라인 전달
- 조사 배경
 - 과거 경향신문에서 소집해제 된 1기 대체복무요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보도한 바 있는데 해당 조사 이후로는 대체복무를 경험한 병역거부자들이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만족도가 어떠한지 외부에 공유된 자료가 없었음.
- 조사 목적
 - 병역거부자들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해당 자료를 토대로 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함. 결과는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임.

[문항 및 결과]²⁹⁾

응답자 복무 기간 (필수 문항, 객관식)

- 1) 1년 미만 복무 중: **8명, 14.3%**
- 2) 1년-2년 사이 복무 중: **26명, 46.3%**
- 3) 2년-3년 사이 복무 중: **21명, 37.5%**
- 4) 소집해제 했습니다: **1명, 1.8%**

본인은
응답 56개



응답자 복무 지역 (필수 문항, 주관식)

- 1) 수도권: **40명, 71.4%**
- 2) 경상권: **10명, 17.9%**

3) 충청권: **5명, 8.9%**

4) 제주: **1명, 1.8%**

복무 영역, 기간, 형태

1. 현행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필수 문항, 객관식)

1) 지나치게 징벌적이다: **25명, 44.6%**

2) 다소 징벌적이다: **29명,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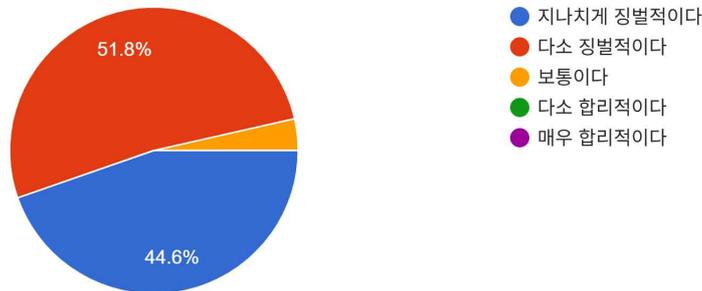
3) 보통이다: **2명, 3.6%**

4) 다소 합리적이다: **0명, 0%**

5) 매우 합리적이다: **0명, 0%**

1. 현행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응답 5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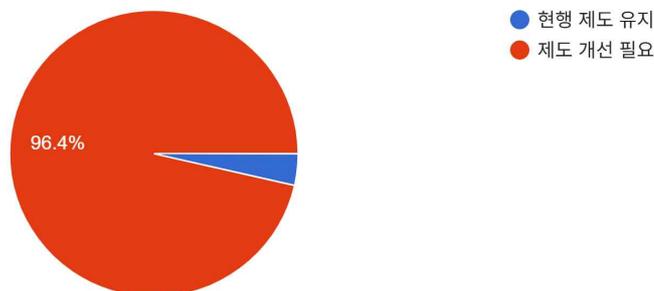
2. 현행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형태로 복무합니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수 문항, 객관식)

1) 현행 제도 유지: **2명, 3.6%**

2) 제도 개선 필요: **54명, 96.4%**

2. 현행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형태로 복무합니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답 5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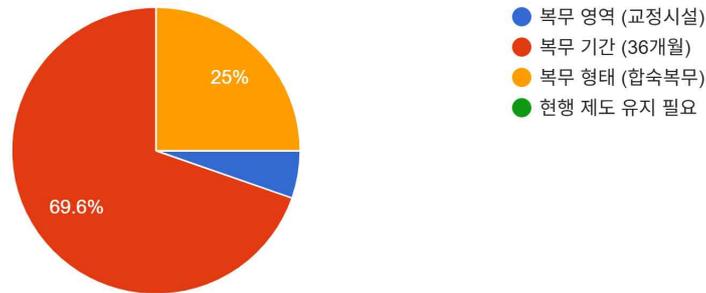


3. 복무영역(교정시설), 기간(36개월), 형태(합숙)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필수 문항, 객관식)

- 1) 복무 영역 (교정시설): **3명, 5.4%**
- 2) 복무 기간 (36개월): **39명, 69.6%**
- 3) 복무 형태 (합숙복무): **14명, 25%**
- 4) 현행 제도 유지 필요: **0명, 0%**

3. 복무영역(교정시설), 기간(36개월), 형태(합숙)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응답 5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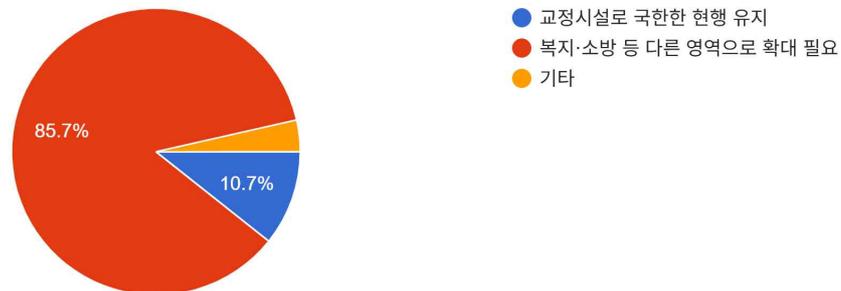


4-1. 현재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수 문항, 객관식)

- 1) 교정시설로 국한한 현행 유지: **6명, 10.7%**
- 2) 복지·소방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 필요: **48명, 85.7%**
- 3) 기타: **2명, 3.6%**

4-1. 현재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답 56개



4-2. 위에 질문에 '기타'로 응답한 경우 추가적 의견 (선택 문항, 주관식)

2명 응답, 응답 내용 요약함

개인의 적성과 계발에 맞는 분야 필요
 교정시설만 하는 것은 업무가 한정적이며,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선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괴롭힘이 있음. 출퇴근 복무 필요.

4-3. 복무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택 문항, 주관식)

14명 응답, 응답 내용 요약함

- 업무 부적합성 및 영역 확대: 교도소 내 특정 업무(초소 구축, 탄약 관리 등)가 양심의 자유와 충돌하므로 복무 영역 확대가 필요함.
- 사회적 기여도 제고: 단순 교정 보조에서 벗어나 요양원, 소방, 재난 안전 등 인력난이 심한 공익 분야로 배치하여 인력 낭비를 막아야 함.
- 인력 배치 효율화: 보조 인력이 불필요한 부서 대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가 기관 및 복지 시설에 적절히 배치해야 함.
- 인식 개선 및 프레임 전환: 교정시설에만 국한된 복무는 '대체징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하므로, 다양한 분야 확대를 통해 긍정적 인식을 높여야 함.
- 처우 및 제도 개선: 합숙 제도 폐지 등을 통해 자율성을 높이고, 대체복무자를 재소자처럼 대하는 교정시설 내 수직적 인식을 개선해야 함.
- 신체적 여건 고려: 신체 등급(4급 등)이 낮은 대원들을 위해 몸을 덜 쓰는 업무 등 개인의 여건에 맞는 복무 영역이 필요함.
- 업무 전가 방지: 시간이 흐르며 공무원의 본래 업무가 대원들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엄격한 운영이 필요함.
- 자기 계발 및 발전: 다양한 분야에서의 복무를 통해 대원 개인이 사회에서 쓰임새를 찾고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해야 함.

5-1. 대체복무는 현재 '합숙' 생활을 해야합니다. 이런 복무 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수 문항, 객관식)

- 1) 현행 합숙복무가 적합하다: **2명, 3.6%**
- 2) 출퇴근 복무가 적합하다: **21명, 37.5%**
- 3) 복무 분야나 자녀 양육과 같은 개인 상황에 따라 합숙과 비합숙을 병행해야 한다: **33명, 58.9%**

5-1. 대체복무는 현재 '합숙' 생활을 해야합니다. 이런 복무 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답 56개



5-2. 복무 형태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택 문항, 주관식)

18명 응답, 응답 내용 요약함

제도의 징벌적 성격 및 형평성 문제

징벌적 제도: 현행 합숙은 업무 효율과 무관하며, 군 복무 형태를 무리하게 모방한 징벌적 성격이 강함. 이중 부담: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에 합숙까지 강제하는 것은 다른 병역 형태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며 형평성에 어긋남.

군사적 필요성 부재: 전시 대비나 상시 대기가 필요한 군인과 달리,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역에게 합숙은 불필요함.

가정생활 및 개인 기본권 보장

가정 유지의 어려움: 기혼 대원들의 경우 가사 조력, 육아, 부부 관계 유지 등 기본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며, 이는 저출산 시대 흐름과도 역행함.

가족 돌봄 공백: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간병 등 긴급한 가족 사정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움.

연령대 고려: 제도 도입 지연으로 대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만큼, 각자의 사회적·가족적 환경을 고려한 복무 형태가 필요함.

행정적·경제적 효율성(예산 절감)

세금 낭비 방지: 합숙 시설 건립 및 유지비, 관리 인건비, 식비, 공과금 등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음.

시설 관리 부담 완화: 기관 입장에서도 숙소 관리 및 통제에 드는 행정력을 업무 본연의 영역에 집중할 수 있음.

업무 효율 및 정신 건강

스트레스 감소: 장기간 단체 생활로 인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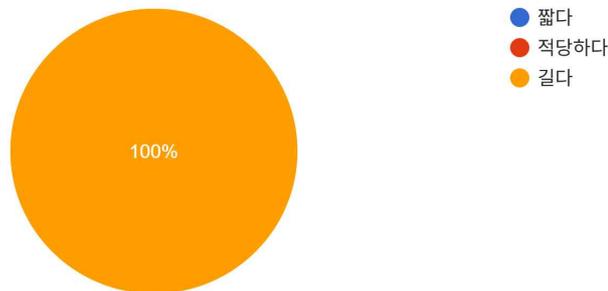
사기 진작: 거주지 근처 배치 및 출퇴근 허용 시 복무 만족도가 높아져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함.

6-1. 현행 복무기간(36개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수 문항, 객관식)

- 1) 짧다: **0명, 0%**
- 2) 적당하다: **0명, 0%**
- 3) 길다: **56명, 100%**

6-1. 현행 복무기간(36개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답 5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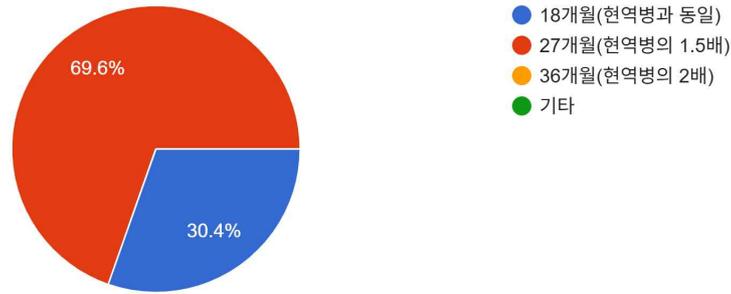


6-2. 현행 합숙, 교정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장 적당한 복무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필수 문항, 객관식)

- 1) 18개월(현역병과 동일): **17명, 30.4%**

- 2) 27개월(현역병의 1.5배): **39명, 69.6%**
- 3) 36개월(현역병의 2배): **0명, 0%**
- 4) 기타: **0명, 0%**

6-2. 현행 합숙, 교정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장 적당한 복무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56개



6-3. 출퇴근이 허용되고 복무 영역 확대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가장 적당한 복무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필수 문항, 객관식)

- 1) 18개월(현역병과 동일): **7명, 12.5%**
- 2) 27개월(현역병의 1.5배): **32명, 57.1%**
- 3) 36개월(현역병의 2배): **3명, 5.4%**
- 4) 복무 영역별 난이도, 출퇴근 여부에 따라 차등: **14명, 25%**
- 5) 기타: **0명, 0%**

6-3. 출퇴근이 허용되고 복무 영역 확대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가장 적당한 복무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5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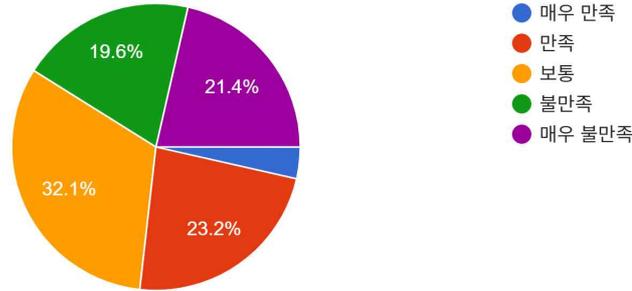
복무 생활

7-1. 대체복무 업무 만족도 (필수 문항, 객관식)

- 1) 매우 만족: **2명, 3.6%**

- 2) 만족: **13명, 23.2%**
- 3) 보통: **18명, 32.1%**
- 4) 불만족: **11명, 19.6%**
- 5) 매우 불만족: **12명, 21.4%**

7-1. 대체복무 업무 만족도
응답 56개



7-2. 만족도에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택 문항, 주관식)

19명 응답, 응답 내용 요약함

제도적·구조적 문제 (불만족 요인)

징벌적 성격: 36개월이라는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과 합숙 형태는 인권 침해이자 삶의 큰 손실로 느껴짐.

종교의 자유 제약: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핵심인 종교 집회 및 봉사 참여가 어려워짐.

시설별 불균형: 지역 및 시설에 따라 업무 강도의 편차가 크며, 격무지에 대한 보상이나 복지 혜택이 불공정함.

업무 내용 및 보람 (불만족 요인)

단순 반복 및 무의미: 사회 기여나 배움의 기회가 없는 단순 노무가 많아 보람을 느끼기 어려움.

업무 경계 모호: '보조' 업무를 넘어 직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도 이해도가 낮은 직원들로부터 과도한 업무를 부여받음.

인력 배치 비효율: 불필요한 곳에 인력이 과하게 투입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체계가 보임.

조직 문화 및 처우 (혼재)

수직적 문화: 교정시설 특유의 수직적 계급 구조 내에서 신규 직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거나 관리자의 사적 감정에 따른 갑질·역압이 발생함.

긍정적 측면: 군대식 부조리가 덜하고, 대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직원들이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음.

권리 제한: 법적으로 허용된 외출·외박을 고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있음.

생활 환경 (불만족 요인)

열악한 주거: 한 방에 8명이 거주하는 과밀 수용, 소방법 위반 의심 사례 등 생활관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관리 편의주의적임.

8-1. 본인은 복무관리관으로부터 인권침해적인 언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필수 문항, 객관식)

- 1) 인권침해를 당한 적 있다: **19명, 33.9%**
- 2) 가혹행위를 당한 적 있다: **1명, 1.8%**
- 3)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당한 적 있다: **3명, 5.4%**
- 4) 없다: **33명, 58.9%**

8-1. 본인은 복무관리관으로부터 인권침해적인 언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 56개



8-2. 본인은 복무관리관 외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적인 언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필수 문항, 객관식)

- 1) 인권침해를 당한 적 있다: **18명, 32.1%**
- 2) 가혹행위를 당한 적 있다: **1명, 1.8%**
- 3)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당한 적 있다: **5명, 8.9%**
- 4) 없다: **32명, 57.1%**

8-2. 본인은 복무관리관 외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적인 언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 5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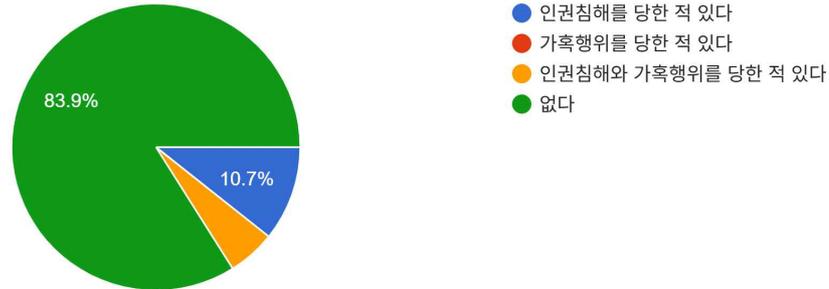
8-3. 본인은 대원으로부터 인권침해적인 언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필수 문항, 객관식)

- 1) 인권침해를 당한 적 있다: **6명, 10.7%**
- 2) 가혹행위를 당한 적 있다: **0명, 0%**
- 3)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당한 적 있다: **3명, 5.4%**

4) **없다: 47명, 83.9%**

8-3. 본인은 대원으로부터 인권침해적인 언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 56개



8-4. 본인이 직접 겪은 인권침해적 언행이나 가혹행위는 무엇이었나요? (선택 문항, 주관식)

13명 응답, 응답 내용 요약함

- 근무지 직원 및 관리자에 의한 갑질과 폭언
언어폭력 및 모욕: 욕설, 인격 모욕적 하대, "폐급"."짜가지 없다" 등 비하 발언, 특정 대원에 대한 악의적 평판 유포.
부당한 지시와 강요: 수용자 취급을 하는 고압적 태도, '90도 인사' 강요 및 인사 다시 시키기, 관리자의 잘못을 대원에게 전가하는 화풀이(내리갈굼).
신체적 가혹행위: 머리 밀기, 헤드락 등 과도하고 강압적인 스킨십.
차별 발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
- 복무 권리 침해 및 운영상의 부조리
휴식 및 자유 제한: 주말 행동 자유 침해, 일부의 실수를 구실로 한 집단적 휴식 시간 단축(연대책임).
행정 권한 남용: 합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외출·외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승인 과정에서 억박지르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권리 행사를 방해함.
- 대원 간(동료 간) 갈등 및 인권침해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대표 대원 등에 의한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소문 유포로 인한 부정적 평판 형성 및 정신적 상처.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생활관 내 종교 활동 강요, 의견 충돌 시 폭력 행사, 심야 시간 소란으로 인한 수면권 침해.

9-1. 타인이 복무관리관으로부터 인권침해적인 언사나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습니까? (필수 문항, 객관식)

- 1) 인권침해를 목격한 적 있다: **19명, 33.9%**
- 2) 가혹행위를 목격한 적 있다: **2명, 3.6%**
- 3)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목격한 적 있다: **4명, 7.1%**
- 4) **없다: 31명, 55.4%**

29) 주관식 응답에 있어서 개인이 특정되어 익명성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거나, 질문 내용과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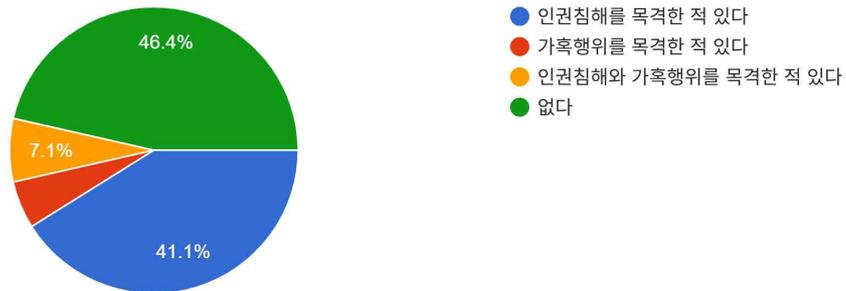
9-1. 타인이 복무관리관으로부터 인권침해적인 언사나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습니까?
응답 56개



9-2. 타인이 복무관리관 외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적인 언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습니까? (필수 문항, 객관식)

- 1) 인권침해를 목격한 적 있다: **23명, 41.1%**
- 2) 가혹행위를 목격한 적 있다: **3명, 5.4%**
- 3)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목격한 적 있다: **4명, 7.1%**
- 4) 없다: **26명, 46.4%**

9-2. 타인이 복무관리관 외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적인 언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습니까?
응답 56개



9-3. 타인이 대원으로부터 인권침해적인 언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습니까?

- 1) 인권침해를 목격한 적 있다: **8명, 14.3%**
- 2) 가혹행위를 목격한 적 있다: **1명, 1.8%**
- 3)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목격한 적 있다: **2명, 3.6%**
- 4) 없다: **45명, 80.4%**

한 응답이 있는 경우가 있어 요약하여 기술하였음.

9-3. 타인이 대원으로부터 인권침해적인 언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습니까?

응답 56개



9-4. 목격한 인권침해적 언행이나 가혹행위는 무엇이었나요? (선택 문항, 주관식)

10명 응답, 응답 내용 요약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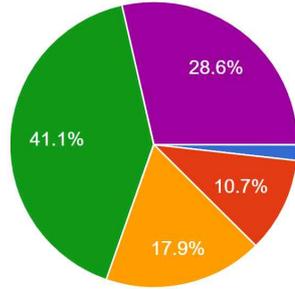
<p>관리자 및 직원의 고압적 태도와 폭언 인격 모욕 및 비하: "별레", "세금 도둑" 등 인격 모욕적 발언과 상습적인 욕설, 무시하는 태도가 빈번함. 신앙 및 건강권 침해: 업무 중 대원의 신앙을 모욕하거나, 실제 환자에게 "피병"이라며 다그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책임 전가 및 강압: 재소자의 사고(탈옥 시도 등) 책임을 대원에게 뒤집어씌우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함. 성희롱: 복무지 내에서 성희롱 사례가 목격됨.</p>
<p>대원 간(동료 간) 괴롭힘 집단 따돌림 및 폭력: 특정 대원을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따돌리는 행위, 단체 대화방 등에서의 공개적인 비난과 모욕, 심한 경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함. 업무 떠넘기기: 동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원 온 대원에게 적절한 지시 없이 과도하게 업무를 전가함.</p>
<p>권한 남용 및 보복: 규정보다 팀장·기관의 재량이 비대하여 대원의 정당한 항의를 무시하거나, 복지를 빌미로 보복하려는 경향이 있음. 피해 대원 보호 미흡: 가혹행위로 인해 복무지 변경을 희망해도 수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음. 상시적 인권 침해: 언행을 통한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어 대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를 소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환경이 불안정함.</p>

10-1. 인권진단 및 복무만족도 조사의 실효성은 어떠한가요? (필수 문항, 객관식)

- 1) 매우 실효성 있다 (내가 적은 요구사항이 잘 수용된다): **1명, 1.8%**
- 2) 실효성 있다: **6명, 10.7%**
- 3) 보통: **10명, 17.9%**
- 4) 실효성 없다: **23명, 41.1%**
- 5) 매우 실효성 없다 (내가 적은 요구사항이 전혀 수용되지 않는다): **16명, 28.6%**

10-1. 인권진단 및 복무만족도 조사의 실효성은 어떠한가요?

응답 5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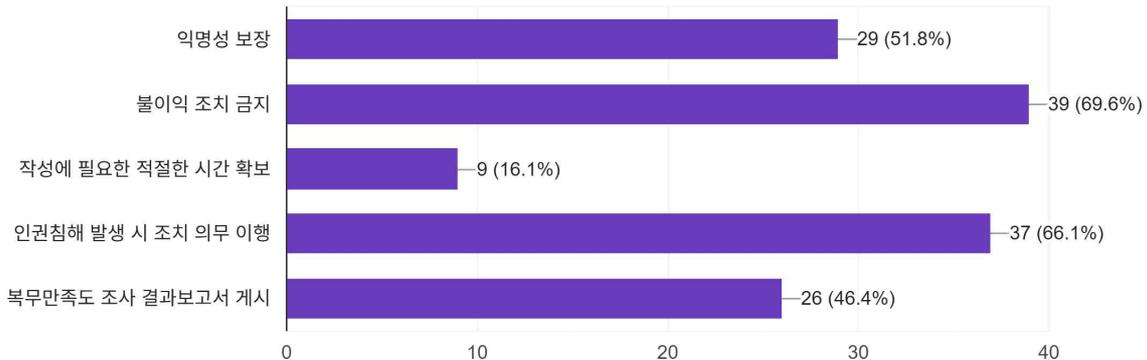
- 매우 실효성 있다 (내가 적은 요구사항이 잘 수용된다)
- 실효성 있다
- 보통
- 실효성 없다
- 매우 실효성 없다 (내가 적은 요구사항이 전혀 수용되지 않는다)

10-2. 인권진단 및 복무만족도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필수 문항, 객관식(복수 응답 가능))

- 1) 익명성 보장: **29명, 51.8%**
- 2) 불이익 조치 금지: **39명, 69.6%**
- 3) 작성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 확보: **9명, 16.1%**
- 4)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의무 이행: **37명, 66.1%**
- 5) 복무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게시: **26명, 46.4%**

10-2. 인권진단 및 복무만족도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 응답 가능)

응답 5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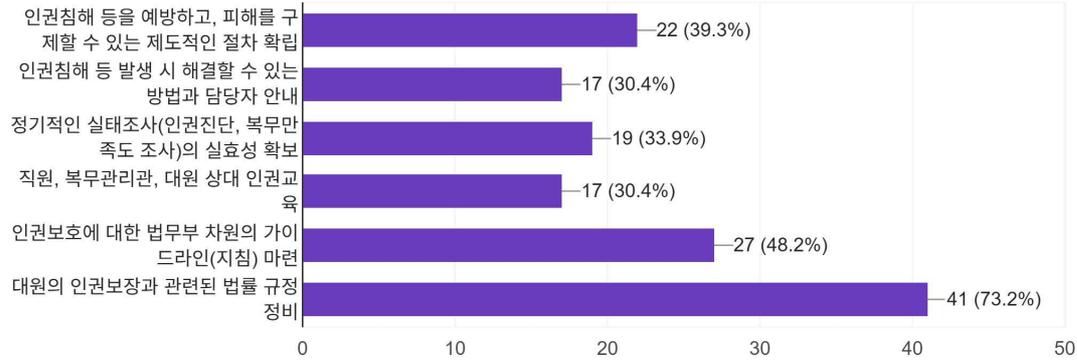


11. 인권침해, 가혹행위,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필수 문항, 객관식(복수 응답 가능))

- 1)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 확립: **22명, 39.3%**
- 2) 인권침해 등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담당자 안내: **17명, 30.4%**
- 3) 정기적인 실태조사(인권진단, 복무만족도 조사)의 실효성 확보: **19명, 33.9%**
- 4) 직원, 복무관리관, 대원 상대 인권교육: **17명, 30.4%**
- 5) 인권보호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27명, 48.2%**

6) 대원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비: **41명, 73.2%**

11. 인권침해, 가혹행위,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 응답 가능)
응답 56개



평가

12. 대체복무 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를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좋았던 점, 문제점, 어떤 방향이나 내용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 등 내용에 구애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선택 문항, 주관식)

23명 응답, 응답 내용 요약 함

- 합숙 제도 및 복무 기간의 징벌성 개선 (가장 핵심적인 요구)
징벌적 성격: 36개월의 긴 기간과 합숙의 결합은 과도하게 징벌적이며 인권 침해 소지가 큼.
출퇴근제 도입: 업무 효율 및 예산 절감, 대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거주지 기반 출퇴근제로의 전환이 시급함.
기간 조정: 현역의 2배에 달하는 기간은 가혹하며, 업무 강도에 따른 기간 차등화(소방·요양 등 격무 시 단축)가 필요함.
- 기관별·관리자별 재량권 남용 및 복지 불균형
일관성 없는 규정: 소장이나 복무관리관의 개인적 성향·기분에 따라 외출·외박 등 복지 수준이 천차만별임("북한과 미국 차이"로 비유).
중앙 관리 필요: 법무부 차원의 통일된 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급 기관의 갑질이나 부당한 규제를 감시할 상급 기관의 실태 조사가 필요함.
- 복무 환경 및 조직 문화 개선
인식 개선: 일부 직원들이 대원을 '수용자'와 비슷하게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대체복무제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인권 감수성 교육이 필요함.
무관심과 방치: 직접적인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무관심, 업무 경계 모호성(직원 업무 전가)도 큰 문제로 지적됨.
보호 장치: 인권 진단 시 익명성 보장, 부당한 대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예: 상시 녹음 허용 등) 요구.
- 복무 영역의 다양화
사회적 기여도 제고: 교정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소방, 의료, 요양, 재난 안전 등 인력이 절실한 공익 분야로 확대하여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보탬이 되길 원함.
신체 조건 고려: 4급 판정자 등 신체적 여건이 어려운 대원들을 위한 맞춤형 업무 배치가 필요함.

<p>청원휴가 및 특별 상황에 대한 배려 부족 경조사 휴가 현실화: 부모상 등 긴급 상황 시 행정 절차를 밟기에 4박 5일은 턱없이 부족함. 3년이라는 긴 복무 기간을 고려해 간병 및 경조사 휴가 규정의 전면 개편이 필요함. 유연한 대응: 가족의 경제적·건강상 위기 시 복무 일시 정지나 출퇴근 전환 등 유연한 제도적 배려가 없음.</p>
<p>대원 간의 갈등 및 기강 문제 내부 갈등: 같은 종교 내에서도 발생하는 따돌림, 성소수자 차별, 종교 활동 강요 등에 대한 중재 및 관리 체계가 필요함. 기강 확립: 일부 대원들의 업무 태만이나 일탈이 성실한 대원들의 복지 제한으로 이어지는 '연대책임' 방식을 지양하고, 개인별 상벌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함.</p>
<p>긍정적인 점 양심을 지키며 복무할 수 있는 제도 자체에 대한 감사.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가 덜하고, 일반 군 복무에 비해 외출·외박 제도가 잘 마련된 점(일부 소에 한함). 초기보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부 및 관계자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p>

토론3

다들 자유를 실현하는 대체역 제도

시 우 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활동가 모임

2018년 6월과 11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괄적인 형사처벌을 중단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는 약 2만 명의 병역거부자가 37,00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역사적 부정의에 마침표를 찍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오랜 기간 투쟁해 온 사회운동의 입장에서도 대체복무의 제도화는 뜻깊은 결실이자 소중한 승리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설렘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문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공익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도입될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¹⁾

그로부터 7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2026년 1월 19일, 청년 활동가 두부는 군 복무와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하는 완전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두부는 대체복무제도가 병역거부자와 평화활동가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임을 인정하면서도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국방부와 병무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 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복무 영역이 교정시설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도가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또 다른 통제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²⁾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폭력과 전쟁을 거부하는 이들,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이들, 평화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두부의 이야기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기존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한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대체복무제도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비단 최근에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새로운 병역의 종류를 병역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와 정부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최대 60개월 동안 지뢰 제거나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등의 업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³⁾ 이에 사회운동에서는

1)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외 전원재판부 결정.

2) 두부, 평화를 상상하고 평화를 선택합니다, 두부 병역거부 시민사회 간담회, 2026.

3) 대체복무 “44개월 지뢰 제거” vs “30개월 공익 업무”, 한겨레, 2018. 8. 21.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발표하면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현역 육군 대비 최대 1.5배의 복무 기간 설정, 사회 공공성과 시민 안전에 기여하는 복무 영역 지정,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 인정 등을 주장했습니다.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의 청사진을 그린 시민사회안과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이 7년 반의 시차를 가로질러 비슷한 결을 지닌다는 점은 현행 대체복무제도 도입 당시에 우려했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대체역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 취지와 국제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군 복무가 아닌 방식으로 공익을 실현하려는 이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법에 반영하는 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대체복무제도 도입으로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현역 남성 군인을 달래고, 국가 안보 위기와 병역자원 부족을 염려하는 보수적인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체역 신청과 심사 과정에서부터 복무 기간, 영역, 형태에 이르기까지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형평성 논리와 ‘병역기피’ 단속 주장이 제도 기획 초기 단계부터 강한 중력을 발휘하면서 인권친화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대체복무는 군 복무의 유의미한 대안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군 복무의 잔여 내지 여집합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대체역은 현역 복무와 동등한 무게를 지닌 병역의 일종임에도 현역 복무가 표준이자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대체역은 어디까지나 예외이자 일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모든 징집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현역 복무를 해야 하며, 극소수의 예외적인 사람에게만 대체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군사주의적 세계관은 대체역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역 복무와는 다르게 신청과 심사 과정에서 매우 까다롭고 때로는 모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복무 기간, 영역, 형태가 지나치게 징벌적이어서 제도의 문턱이 높다는 점, 대체역을 수행하던 중에 원하면 언제든지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지만 반대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리하면 **군 복무로 이끄는 힘은 압도적인 반면 대체복무로 이끄는 힘은 의도적으로 약하게 설정된 제도적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불평등은 병역거부자에게 커다란 고통과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 병역거부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불안해하던 이들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대체역을 신청하는 이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⁵⁾ 대체역을 신청하는 인원이 최근 연간 300여 명으로 고정되는 추세를 지켜보며 어떤 이들은 제도의 억제 효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믿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사실상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징벌로 기능하면서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조차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비극**에 가깝습니다. 가혹한 제도를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군사훈련을 우회하거나, 때로는 형사재판과 수감생활을 각오하고 완전거부를 하게 됩니

‘무기 들지 않을 권리’ 얻는 대체복무자, 실제 복무 어떻게?, KBS, 2019. 11. 20.

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案), 2018. 7. 19.

5) 양심의 자유 보호하는 대체복무제... 신청자 3년 새 86% 급감 왜, 경향신문, 2024. 2. 3.

다. 병역거부자가 할 수 없이 군 복무를 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사례, 대체복무가 군 복무의 대안임에도 다시금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사례, 대체역법 도입 이전처럼 형사처벌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는 대체복무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가운데 완전거부의 사례는 대체복무제도의 실패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거부를 결정한 이들 가운데는 대체복무제가 군대의 존재와 징병제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한국의 완전거부는 주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적극적인 실천에 가까워 보입니다. 대체복무제도가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들이 대체복무를 거부하거나 중단하고 완전거부를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복무를 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1년 반 혹은 그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예전과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하는 이들에게 국가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적어도 대체복무제도의 징벌적인 성격으로 인해 완전거부를 선택하는 이들은 없도록 대체역법을 시급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⁶⁾

현재 시행되는 대체역법이 지닌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대체복무제도가 최소한의 대안으로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영 대상자에게 대체역에 대해 안내하는 것,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 신청인의 재심사 기회를 보장하는 것,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의 담장을 넘어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것,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복무 기간을 국제 인권 규범에 맞게 조정하는 것,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강제된 합숙복무를 완화하는 것, 복무 현장에서 차별·폭력·괴롭힘 금지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것, 실질적인 효과를 지닌 인권 교육을 정례화하는 것, 제도가 도입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떤 것도 빠뜨릴 수 없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대체역법 제정을 기준으로 6년,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이 너무 늦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대체복무제도의 무게중심을 징벌과 배제의 논리에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로 옮겨야 합니다. 그동안 부실한 토대와 적대적인 분위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표류하던 대체역법이 개정 작업을 통해서 올바른 궤도에 진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역거부의 권리가 오롯이 인정되고 온전한 대체복무제

6) 현재 완전거부자는 반복되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 거부를 범죄로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오랜 기간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입영 대상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이 사실상 면제됩니다. 그리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법부는 병역거부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경찰제 판결을 내리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새로 명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완전거부자 뿐만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는 대체역 편입 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병역거부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소집 훈련을 거부할 때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예비군 병역거부자의 사례가 앞서 있기도 했습니다(끊이지 않는 수사·재판에도 예비군 훈련 거부하는 청년들, 뉴스앤조이, 2022. 1. 28.). 이와 관해서 UN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와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복되는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다는 점에서 국제 인권 규범 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가 운영됨으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시한 것처럼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가 실현되고 모든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일이 하루속히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7)

7)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토론4

대체복무제도의 징벌적 성격 해소를 위한 방안

형 혁 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I. 논의의 시작: 제도의 징벌적 요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이 경과한 지금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것임. 즉 ‘양심의 제도화’로 표현될 수 있는 대체역법은 제도의 징벌적 성격으로 인해 여전히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함.
 - 복무기간과 복무기관으로 대별되는 이러한 징벌적 성격은 제도 도입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던 것으로 시민단체와 사계 전문가로부터 제도의 징벌적 요소들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어 왔으나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1대~22대 국회에서도 대체역의 복무기간의 축소와 복무기관의 확장을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안을 확인하기 어려움
- 대체역법이 징벌적 성격을 가지게 된 논의의 배경
 - 병역거부자가 특정 종교에 몰려있으므로 인해 ‘양심의 사유’가 종교 외적인 사유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 정치적/이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 확대시 병역자원 확보와 운용에 어려움
 - 대체복무제도를 악용하고자 할 잠재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판단: 판별 장치의 설치와 운용,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의 설정 등에 대한 불안
- 제도의 징벌적 요소
 - 복무 기간: 36개월. 6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으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제18조 및 제19조)
 - 복무기관: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에 한정(제16조제1항, 시행령 제18조)

II. 대체역 편입 현황

□ 대체역 편입신청 및 복무 현황

- 편입신청 현황: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편입신청 건수가 1,962건이었으나 2025년에는 335건으로 2020년 대비 83%가 감소했음
- 2020년~2025년 편입 신청 건수는 4,030건, 편입(인용) 건수는 3,796건이며 신청 접수 대비 편입률은 94.2%에 달함. 기각/각하는 6년간 18건에 불과함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 및 편입 현황]

(‘25. 12. 31.기준 단위:건)

구분	접수	편입(인용)	기각/각하	철회 등 ¹⁾	처리 중
누계	4,030	3,796	18	94	122
‘25년	335	310	4	14	-
‘24년	338	347	1	10	-
‘23년	368	466	2	13	-
‘22년	453	651	5	17	-
‘21년	574	1,292	5	24	-
‘20년	1,962	730	1	16	-

- 2020년~2025년 사유별 대체역 편입 현황을 보면 종교적 사유와 개인적 신념에 의한 편입이 각각 3,776건, 20건임

[사유별 편입 현황]

(‘25. 12. 31.기준 단위:건)

구분	사유별		
	계	종교	개인
누계	3,796	3,776	20
‘25년	310	309	1
‘24년	347	347	-
‘23년	466	460	6
‘22년	651	646	5
‘21년	1,292	1,284	8
‘20년	730	730	-

- 2020~2025년 대체역으로 편입되지 못한 편입 신청자 사유별 현황을 보면 종교적 사유 편입 신

1) 철회 등 : 철회 92건, 심사중단(사망) 2건

청 건수 3,786건 중 10건, 개인적 신념에 의한 편입 신청 건수 28건 중 8건으로 기각/각하 비율은 각각 0.26%, 28.6%임

[사유별 편입 기각/각하 현황]

(‘25. 12. 31.기준 단위:건)

구 분	사 유 별				
	계	종 교		개 인	
		기각	각하	기각	각하
누 계	18	7	3	2	6
‘25년	4	2	1	1	-
‘24년	1	-	-	-	1
‘23년	2	1	-	-	1
‘22년	5	2	2	-	1
‘21년	5	2	-	1	2
‘20년	1	-	-	-	1

Ⅲ. 징벌적 요소에 대한 논의

1) 복무기간

□ 현역복무와 등가성을 전제로 한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역복무와 등가성은 복무의 난이도에 기준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병역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를 악용하는 잠재적 병역기피자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임
- 지난 6년간 대체역 현황을 보면 종교 사유 외 개인의 신념에 의한 대체역 신청의 증가로 인한 병역자원 확보 및 운용과 관련한 우려할만한 지표는 확인할 수 없음. 막연히 “대체복무의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어느 정도 길게 하는 것은, 대체역 편입심사의 곤란성 문제를 극복하고 병역기피자의 증가를 막는 수단이 된다”²⁾는 현재의 결정은 제도 도입 이전의 논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임. 복무기간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복무기간의 축소가 병역기피자를 양성한다는 지표가 보이면 추후에도 얼마든지 입법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음
- 복무기간의 징벌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합리성이며, 현역복무와의 등가성은 복무의 난이도를 고려한 것이라기 보다는 가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축소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2021헌마1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2) 복무기관의 조정

-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근거는 복무기관이 교정시설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임. 이 역시도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적 정서나 여론을 고려하여 현역복무와의 등가성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는 것으로 보임
- 2018년 기준, 대체복무제 실시 국가 중 대부분이 대체복무자 근무지를 병원, 사회복지 시설, 환경 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군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임(해외사례 참조)
-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제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징벌적 성격으로 보이며, 의료기관 및 소방청 등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3) 기타

-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시행령 제19조)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 병역거부자들이 수용자(收容者) 신분으로 복역할 때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함. 대체복무요원의 전문자격 보유 등에 따른 복무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합숙과 관련하여 결혼 유무, 자녀 유무, 건강상태 등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숙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 해외사례

- 대체복무제 실시 국가 중 대부분이 대체복무자 근무지를 병원, 사회복지 시설, 환경 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군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임
- 이스라엘
 - 「병역법(Defence Service Law)」 제39조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함.³⁾ 「병역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음
 - 이스라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민간병원 등에서 대체복무를 함.⁴⁾
- 오스트리아
 - 대체복무제(Zivildienst)는 1975년에 도입되었으며, 2019년 2월 현재, 「수정연방법: 1986 병무법(Bundesrecht konsolidiert: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Zivildienstgesetz 1986)」에 따라 대체복무제가 운용됨
 - 「수정연방법: 1986 병무법」 제3조에 따라 대체복무자는 병원, 구조작업, 사회장애인지원, 노년층 지원, 마약중독자 지원, 감호시설, 장애인 지원, 망명 신청자나 난민, 질병으로 인한 격리 환자 지원, 재난 구호, 문화재 시설, 아동 양육 지원,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된 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음
- 스위스
 - 1995년 「대체복무연방법(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으며, 1999년 「연방헌법(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제59조⁵⁾에 편입되었음
 -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에 비해 1.5배 길며, 사회복지, 건강, 환경보호 부문 등 공익 성격의 임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관에서 근무함⁶⁾
- 스웨덴⁷⁾
 - 1920년, 「병역거부계획법(Alternative Service Schemes Act)」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해 왔음
 - 대체복무자의 복무 분야는 유치원 아동 돌보미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국한됨

3) 이스라엘 외무부, <<https://mfa.gov.il/mfa/mfa-archive/1980-1989/pages/defence%20service%20law%20-consolidated%20version--%205746-1.aspx>>

4) "Israel Conscientious Objector to Refuse IDF Service for 8th Time", *Haaretz*, 1 April 2013. 그러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정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이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 바 있음. "Israel. The Price of Principles: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 Amnesty International, September 1999, p. 6.

5) 스위스 행정부,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995395/201801010000/101.pdf>>.

6) 국제반전 INGO, <https://www.wri-irg.org/en/programmes/world_survey/reports/Switzerland#sdfootnote17sym>.

7) European Bureau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nnual Repor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Europe 2016*, November 2016, p. 48.

□ 덴마크

- 1917년 「병역대체법(Alternative Service Act)」에 따라 도입. 2017년 기준 덴마크 대체복무제는 「2006년 병역법(2006 National Service Law)」과 「2006 공무에 있어 양심 적합성 관련 법 (Militærnægterloven, 226/2006)」에 의거함
- 상기 법 내 대체복무자의 복무 분야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대체복무자들은 사회문화 시설·UN 관련 기관·교회 및 교회 관련 시설·환경 시설 등에서 복무함⁸⁾

□ 그리스⁹⁾

- 1997년 「No. 2510/97법(Act No. 2510/97)」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도입
- 그리스 대체복무자는 현역복무자보다 복무기간이 긴데, 해군과 공군 대체복무자는 현역복무자에 비해 25%(12개월/15개월), 육군 대체복무자는 67%(9개월/15개월) 더 긴 기간 동안 복무함

□ 핀란드¹⁰⁾

- 1931년 「대체복무법(Alternative Service Act)」에 따라 대체복무 허용
- 대체복무 근무지는 중앙 정부, 지방 정부 혹은 NGO 등임

8) 덴마크 시민단체 <<https://www.borger.dk/politi-retsvaesen-forsvar/Forsvar-og-beredskab/Militaernaegter>>.

9) European Bureau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nnual Repor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Europe 2016*, November 2016. p. 7.

10) European Bureau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nnual Repor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Europe 2016*, November 2016, p. 27.

토론5

이호성 (법무부 교정기획과 사무관)

첨부

대체역법 시민사회 개정안

시민사회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총괄과
검토의견 및 검토안

대체역법 시민사회 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u>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u>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u>병역을 이행하기</u>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u>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양심을</u>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u>사회공공서비스에 복무 함으로써</u> 병역을 <u>대체하기</u>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	<p>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과 같음)</p>
<p>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제4조에</u>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삭제> 제5조에</u>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예비군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예비군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신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편입 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연기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편입신청 및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4. 현역 군인

<삭제>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편입 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연기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편입신청 및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대체역 제도의 통지) 지방병무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병역의무자에게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 대체역 제도 및 편입신청 절차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5조(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2.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3.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1.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2.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3.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인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본문의 각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삭제>

3.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4.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7조(사전심사 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4.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4.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현행과 같음)

제8조(사전심사 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사무기구의 설치)

제11조(사실조사)

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제13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 결정을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 사유)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기구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실조사)

(현행과 같음)

제13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 결정을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재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각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5. 「병역법」 제83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6.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7.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8.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15조(위원회의 각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5. 「병역법」 제83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6.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7.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8.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사) ① 신청인이 위원회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정을 하여야

<신설>

<신설>

제15조(대체역 편입) 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신설>

②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

한다.

③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위한 사실 검증·조사나 그 밖의 재심사 결정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④ 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대체역 편입) 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신청인은 제15조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③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제18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공익적 성격의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

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 ③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개월**로 한다.

<신설>

- ② 대체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간의 산정 및 소집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 ③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현행과 같음)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군 복무의 실제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대 27개월**로 한다.

- ② 대체복무요원의 실제 복무기간은 대체업무의 난이도와 특성, 합숙복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대체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간의 산정 및 소집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최대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제22조(인권보장)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비롯하여 대체복무 기관의 직원은 대체복무요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호를 해야한다.

1.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대체복무기관에 정기적인 인권 실태 조사를 행해야 한다.
2.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 실태 조사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보고 받아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제23조(차별금지) 대체복무요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본문의 각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신설>

제24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24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①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이 당사자로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복무기관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대체복무요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체복무요원(이하 “피해대체복무요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대체복무요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대체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대체복무요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피해대체복무요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대체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2.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신설>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복무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조치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대체복무요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2.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3. 인권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기본인권교육

제26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업무 특성 상 필요에 따라 합숙복무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방법 및 보수·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대체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24조** 제2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3.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 ②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3

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방법 및 보수·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체복무기관의 직원에게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대체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28조** 제2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3. **제2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 ②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24조의2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경고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28조의2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경고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현행과 같음)

제29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삭제>

<삭제>

<삭제>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5. 「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6.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7.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예비군대체복무)

제27조(별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부칙

<신설>

<삭제>

<삭제>

2.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예비군대체복무)

(현행과 같음)

제31조(별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대체복무기관 및 업무, 기간의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이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이 법의 시행 결과, 대체복무요원의 의견, 국제인권규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대체복무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민사회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총괄과 검토의견 및 검토안

I 개요

- 입법취지: 대체복무제도를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참고하여, 병역거부자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공공서비스영역에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함.
- 제정안의 체계(총 4장 33조)

II 수정사항

-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함을 명시(안 제1조)
- 편입신청 대상자 및 신청기간(안 제3조)
 - 현역병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역 복무를 계속하도록 함.
- 대체역 제도의 통지(미반영)
 - 대체역 제도의 통지는 이미 「병역법」 제6조의2를 통해 실시되고 있음.
- 대체역 편입(안 제16조)
 - 현역병이 대체역으로 편입 결정될 경우 절차에 대해 새로이 정함.
- 복무기간(안 제19조)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항

으로서 법률로서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2년 3개월로 명문화함.

- 현역병의 경우 현역 복무기간을 대체복무기간에 산입을 하되, 구체적인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복무기간 조정(안 제20조)

- 기존안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것이 아닌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병무청장이 요청하도록 함(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할 수는 있음).

○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안 제24조)

- 기존안은 중앙행정기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한이 불명확한 관계로 병무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수정함.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안 제26조)

- 기존안은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와 같이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 합숙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함.

○ 대체역 편입 취소(안 제32조)

- 대체역 편입 취소 사유로 「병역법」 상 고발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무단 해외 출국 및 미복귀 등을 삭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역 심사에서 인용 결정을 받거나 자발적인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편입취소를 하도록 함.

III 고려사항

- 대체복무제도의 정례화된 점검을 위해 3년마다 제도의 평가와 개선의 조치를 명문화(기존안 부칙)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

- 대체역 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함께 정하는 것이 업무 배분적 측면에서 바람직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편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편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예비군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으로 복무중인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연기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역 복무를 계속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제15조에 따른 재심사 신청은 제외한다)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편입신청 및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2.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3.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4.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사전심사 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기관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 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같은 종교단체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실조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 및 법인·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증인, 참고인 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기관·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2.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의 요구

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①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자료 등을 회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 결정을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에는 기각 결정을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재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각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5. 「병역법」 제83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6.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7.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8.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5조(재심사) ① 신청인이 위원회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위한 사실 검증·조사나 그 밖의 재심사 결정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④ 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대체역 편입) 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③ 병무청장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이 대체역으로 편입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17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소방관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

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

③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을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한다.

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연간 소집 인원을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3개월로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④ 현역병으로 복무 중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복무기간의 산정 및 소집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인권보장)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비롯하여 대체복무 기관의 직원은 대체복무요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대체복무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인권 실태조사 결과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차별금지) 대체복무요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3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대체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대체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 또는 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병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대체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당사자로서 대체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병무청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대체복무기관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대체복무요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체복무요원(이하 “피해대체복무요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대체복무요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피해대체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대체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대체복무요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대체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대체복무요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대체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복무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조치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대체복무요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2.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3.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제26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

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방법 및 보수·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대체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대체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3.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경고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① 대체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③ 대체복무요원은 다른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예비군대체복무)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입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하도록 소집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소집 절차·기간 및 복무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34조(별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재심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대체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이성윤 · 부승찬 · 서미화 · 백선희 · 손슬 · 용혜인 의원실
대체복무 개선모임(민변,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